

2020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공동 동계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회복과 도전

일시 : 2020년 12월 12일(토) 13:00~18:00

진행방식: 화상 학술대회(Zoom)

주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공동 동계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회복과 도전

일시 : 2020년 12월 12일[토] 13:00~18:00

진행방식: 화상 학술대회[Zoom]

주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공동 동계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회복과 도전”

- 일 시: 2020년 12월 12일 (토) 13:00~18:00
- 진행방식: 화상학술대회(Zoom)
- 주 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 후 원: 한국연구재단

■ 상임이사회 및 개회식

13:00 ~ 14:00 상임이사회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임상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감사패 전달식

■ 1부 세션1 14:20 ~ 16:00

좌장: 박윤주 (계명대)

“라틴아메리카 사회: COVID-19와 불평등”

[발 표]

COVID-19시대 멕시코의 단면들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라틴아메리카의 신채굴주의: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최해성 (한국외대)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como desventaja de los pueblos indígenas ante el COVID-19

Gerardo Gómez (부산외대)

난민, 혐오, 전염병: COVID-19 전후 콜롬비아 일간지 엘 띠엠프(el tiempo)

신문기사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손지혜 (고려대 박사수료), 한기덕 (고려대 박사수료), 윤인진 (고려대)

[토 론]

강경희 (제주대), 박경은 (서울대), Saúl Serna (우송대), 임태균 (서울대)

■ 1부 세션2 14:20 ~ 16:00

좌장: 이재학 (고려대)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발 표]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권(COVID-19 and the right of nature)

조희문 (한국외대)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Buen Vivir 담론과의 관계 연구

조영현 (부산외대)

2020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공동 동계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회복과 도전”

- 일 시: 2020년 12월 12일 (토) 13:00~18:00
- 진행방식: 화상학술대회(Zoom)
- 주 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 후 원: 한국연구재단

브라질 원주토지 소유권 문제

김영철 (부산외대)

[토 론]

강정원 (성균관대), 김윤경 (한국외대), 이미정 (한국외대)

- Coffee Break (16:00 ~ 16:10)

- 2부 세션3 16:10 ~ 17:50

좌장: 김기현 (선문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 표]

페루 대통령제의 특성과 한계: 비스카라 정부의 탄핵 국면을 중심으로

김유경 (한국외대)

중국의 아르헨티나 우주기지 구축과 지정학적 함의

손혜현 (국립외교원)

어제의 적 혹은 오늘의 동지?: 반란단체 합법화를 통한 국가건설

노태구 (서울대 대학원)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이상현 (전북대)

[토 론]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차경미 (부산외대), 이순주 (울산대), 곽재성 (경희대)

- 2부 세션4 16:10 ~ 17:50

좌장: 우석균 (서울대)

“대학원 세션”

[발 표]

『도냐 바르바라』에 나타난 20세기 초반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형성

김유진 (경희대 대학원)

『Nadie me verá llorar』의 새로운 여성 주체와 멕시코 역사 쓰기

조은지 (경희대 대학원)

2020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공동 동계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회복과 도전”

- 일 시: 2020년 12월 12일 (토) 13:00~18:00
- 진행방식: 화상학술대회(Zoom)
- 주 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외교부
- 후 원: 한국연구재단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타난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김형중 (경희대 대학원)

La reinterpretación de *Malinche* desde el perspectiva moderna

이미경 (경희대 대학원)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과 『Cambio de armas』: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적 위계 구조

김지선 (경희대 대학원)

[토 론]

조혜진 (고려대), 박호진 (한국외대)

■ 2부 세션5

16:10 ~ 17:50

좌장: 하상섭 (한국외대)

“LASAK-외교부 논문상 수상자 세션”

[LASAK-외교부 논문상 시상식]

수막카우사이(부엔 비비르): 채굴주의(extractivism)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가? 에콰도르의 El Mirador 광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제인 (한국외대 대학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미통합체제(SICA) - 코로나19 이후 SICA의 대응책과

통합 프로세스 확대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손은아 (한국외대 대학원)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연구: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박근유 (한국외대 대학원)

[토 론]

이태혁 (부산외대), 정상희 (계명대)

■ 총회 및 폐회식 (17:50 ~ 18:00)

[윤리교육]

[폐회사]

이재학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1부

세션1

라틴아메리카 사회: COVID-19와 불평등

[좌 장]

- 박윤주(계명대)

[발 표]

- 림수진(멕시코 콜리마대학교) "COVID-19시대 멕시코의 단면들"
- 최해성(한국외대)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라틴아메리카의 신채굴주의: 파타고니아 세일 개발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Gerardo Gómez(부산외대)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como desventaja de los pueblos indígenas ante el COVID-19"
- 손지혜(고려대 박사수료), 한기덕(고려대 박사수료), 윤인진(고려대) "난민, 혐오, 전염병: COVID-19 전후 콜롬비아 일간지 엘 띠엠펜(el tiempo) 신문기사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토 론]

- 강경희(제주대), 박경은(서울대), Saúl Serna(우송대), 임태균(서울대)

LASAK 2020, 통계학술대회 12.12.2020

COVID-19 시대, 멕시코의 단면들

림수진 Lim, Su Jin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Universidad de Colima

단면 1: 확진자 1백만, 사망자 10만,,



<https://www.infobae.com/america/mexico/2020/12/01/coronavirus-en-mexico-se-registraron-6472-nuevos-casos-y-285-muertes/>

단면 2: 숫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 난세의 영웅, 보건부 차관 Hugo López Gatell Ramírez

➤ 공식과 비공식 사이

➤ 8.8배와 3.3배

➤ 예측 시나리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076&CMPT_CD=SEARCH

단면 3: 최전선에 선 의료진, 희생과 항의

□ 2020년 4월 확진자 중 의료진 비중 40%

□ 우리에게, 보호장비를 달라!

□ 살균제와 집단런치

□ 의료 실습생 철수

□ 쿠바 의료진 도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368&CMPT_CD=SEARCH

단면 4: 선물이 뿌려졌다, 나르꼬로부터

- 생필품 상자
- 도심 깊숙이
- 코로나 시대의 민심
- 정부의 무관심 혹은 무능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299&CMPT_CD=SEARCH

단면 5: 슬픈, 뉴노멀 2020 06 01

- 확진자 10만 명, 사망자 1만 명에서 시작된 뉴노멀
- 의료진 9천 명 감염, 150명 사망
- 인구 대비 검사 건 수 최저
-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 최대



Ayuntamiento de Acapulco 제공

단면 6: 여전히, 폐쇄된 국경들,,

- 멕시코 – 미국 간 국경 폐쇄
- 멕시코 – 과테말라 간 국경 폐쇄
-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이주자들



<https://www.infobae.com/america/fotos/2020/03/19/incertidumbre-asi-luce-la-frontera-entre-mexico-y-eeuu-en-tiempos-de-coronavirus/>

단면 7: 코로나 시대, 또 다른 죽음들,,

- 피살
- 페미니씨디오
- 밀주



<https://www.milenio.com/policia/omar-garcia-harfuch-paso-atentado-secretario-s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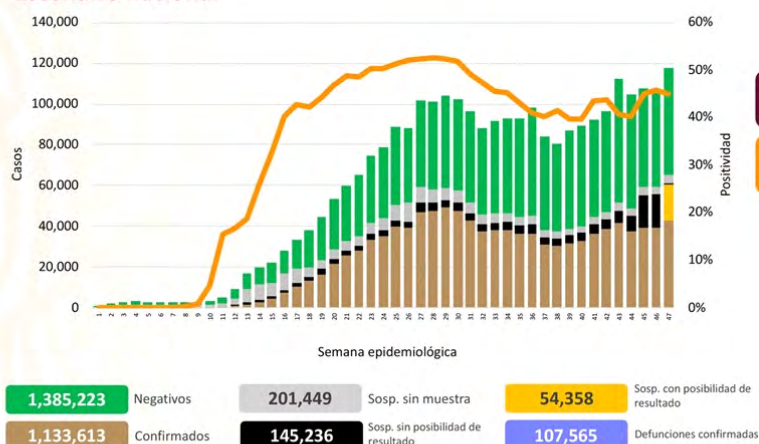
단면 8: COVID, 회복도 전망도 가늠키 어려운



2020년 12월 3일, Imagen Noticia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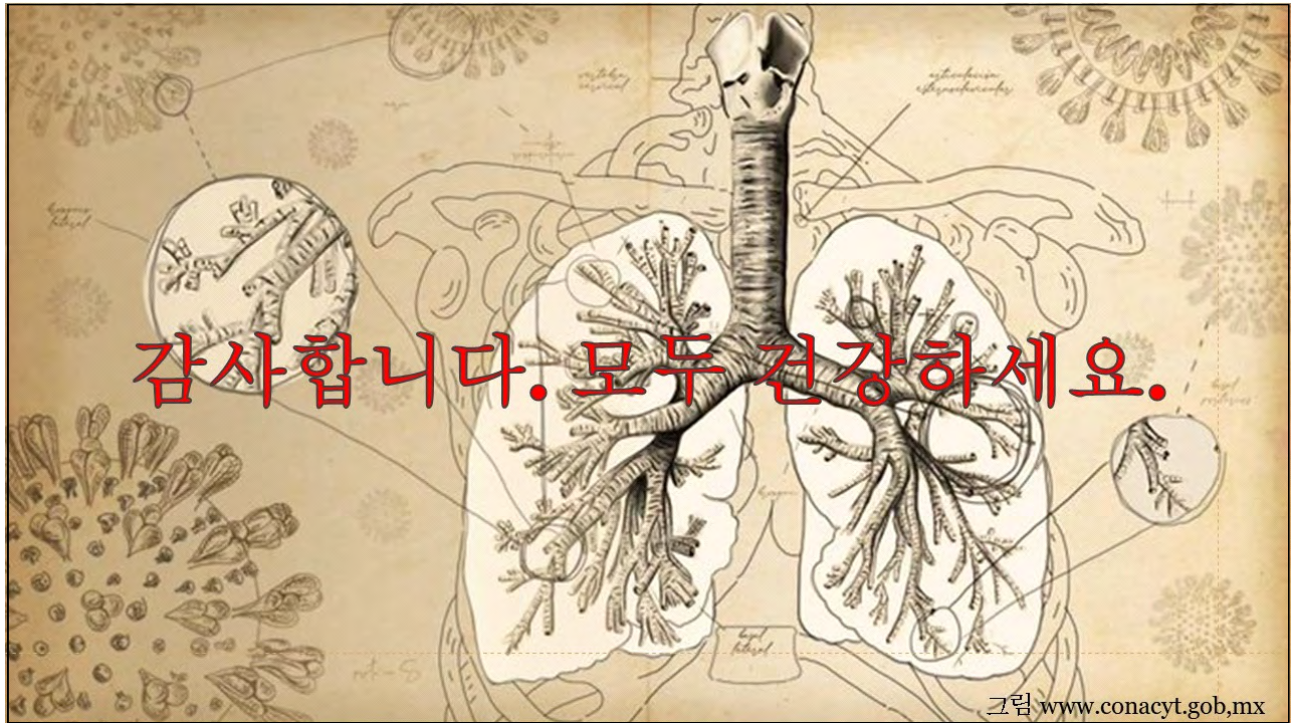
COVID-19 México: casos positivos, sospechosos y negativ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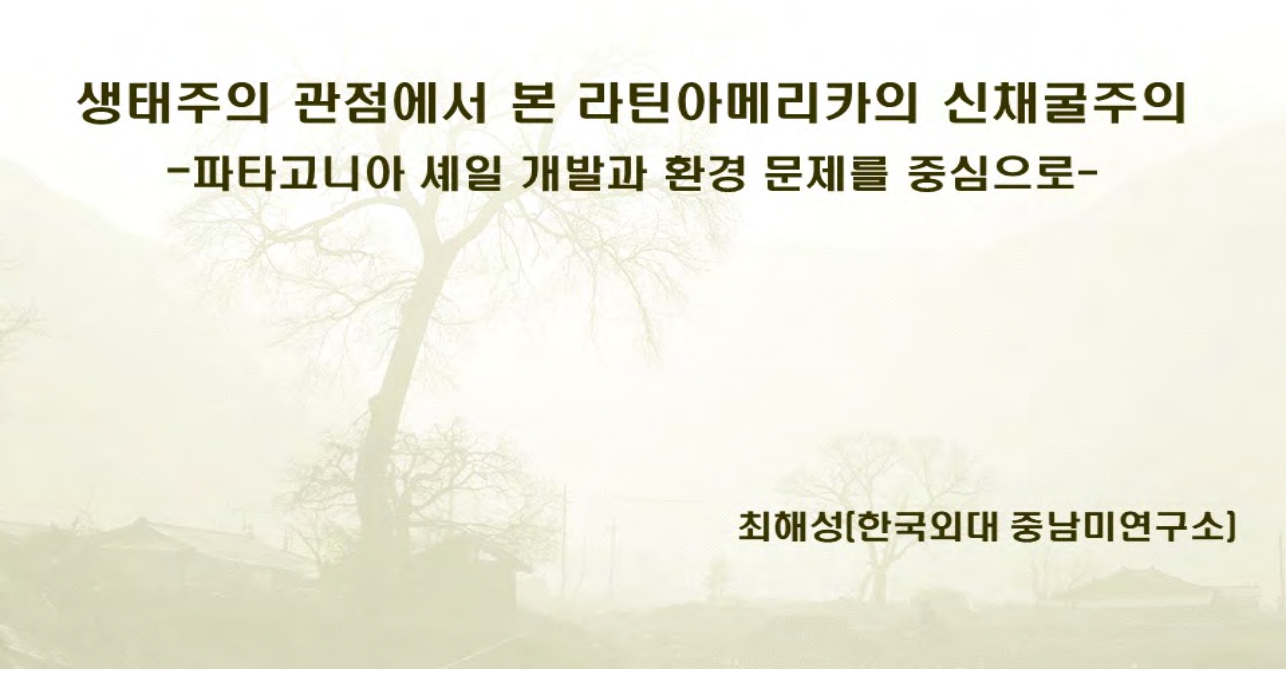
Escenario nacional



nte: SSA(SPPS/DGE/INDRE/Informe técnico.COVID-19 /México- 2 diciembre 2020 [corte 9:00hrs]

<https://twitter.com/HLGat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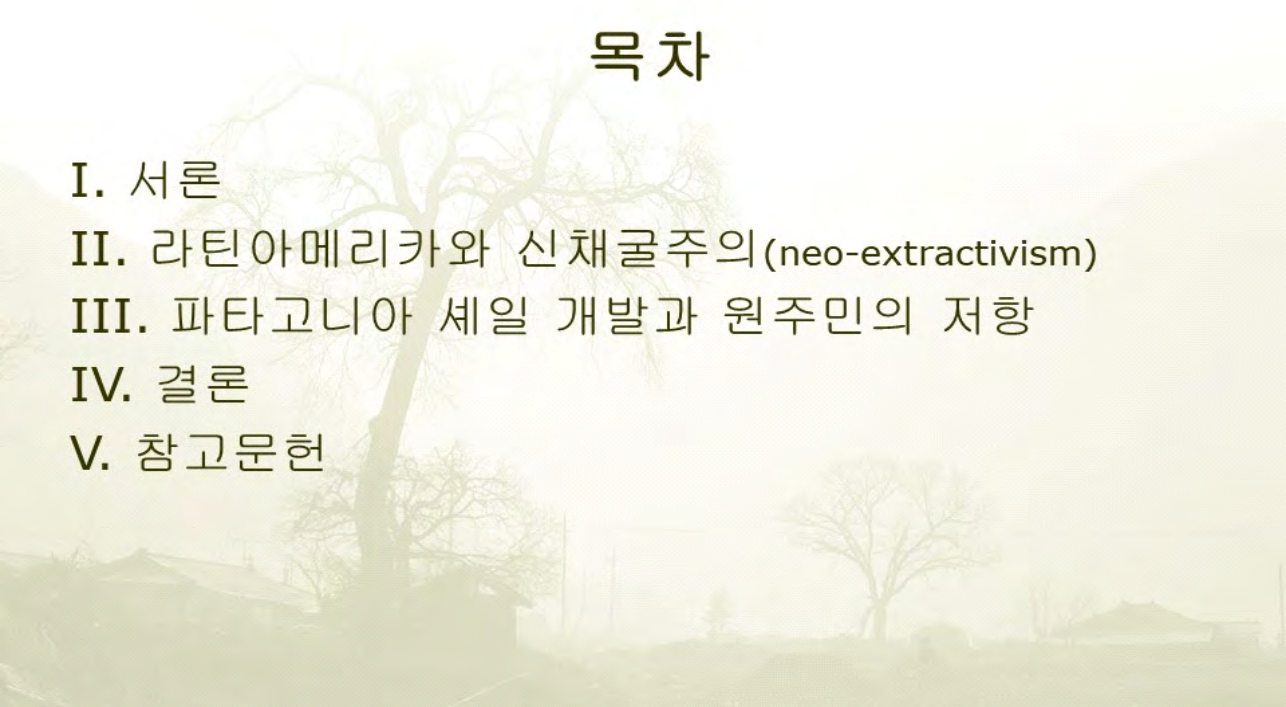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라틴아메리카의 신채굴주의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최해성[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목 차

- I. 서론
-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neo-extractivism)
-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과 원주민의 저항
- IV. 결론
- V. 참고문헌

I. 서론

1.1 문제 제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경종

-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
- 인류가 기존 성장방식 고수할 경우 심각한 위기 직면
- 낙관적 계산으로도 2020년 석유자원 고갈, 2040년 근대문명 붕괴 경고.

1.2 인류의 뒤늦은 자성과 대응

- 화석 원료 기반의 산업 문명에 대한 자성 계기 마련
- 근대화와 ‘개발’, ‘발전(주의)’의 한계 인식
- 회복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한 위기감: 파리협정(2015년)
 -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대체, 195개국 서명
 - 지구 평균 온도 상승 2°C 이하 1.5°C 이하로 막는 노력

I. 서론

1.3 새로운 변수의 출현: 이른바 미국의 ‘세일 혁명’

-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선언. 세일 개발의 제약 탈피.
- 화석원료 소비 축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지연 우려
- 세일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부상

1.4 중남미의 세일 개발과 채굴주의 경제의 문제점 부각

- 중남미 세일 매장량 조사에 따른 기대감 상승
- 이른바 ‘신채굴주의’ 논쟁: 과거와 달리 자원 개발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당성 확보.
분배 및 양극화 해소에 주력
- 여전히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
세계 경제 체제에서 자원 공급지 굴레 벗어나기 어려움

I. 서론

1.5 라틴아메리카 신채굴주의의 문제

-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주거지 박탈, 강제 이주 등 또다른 양극화의 희생 발생.
- 이 희생은 가장 약한 고리인 원주민들에게 집중됨.
자원의 채굴, 대규모 농업에 따른 삼림 파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대로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 이러한 복합적 문제의 대표적 상징:
파타고니아 바까 무에르따 지대의 마푸체(Mapuche)족
 - 세일 개발에 따른 생존권 위협의 문제점 발생
 - 단순한 원주민 피해 사례 연구에 머물지 않음
 - 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를 반대하는 원주민의 목소리
근대 산업 문명 폐해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함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

2.1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숙명

- 가장 대표적 정의
『수탈된 대지: 라틴아메리카500년사』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 근대 서구 문명의 직접적인 영향
 - ‘근대화’, ‘발전’, ‘개발’의 그림자 직접 체험
 - 근대 산업문명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 지속적 문제 제기
 -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끊임 대안 제시.
(종속이론, 해방신학, 지속 가능한 성장, 자연권,
‘buen vivir’, ‘Pluri-verse’)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

2.2 채굴주의와 신채굴주의 (neo-extractivism)

- 신중한 용어 사용 전제: 많은 개념들의 등장과 소멸
- (신)채굴주의: 세계 체제의 불균형, 중심-주변부, 글로벌 남북문제 등에 대한 분석, 해석의 관점 제공.
 - “식민시기부터 이어져온 자본의 축적 양식” (Acosta, 2012)
 - “제국주의 본국-식민지 영토 간의 차등화-계급화된 역사적-지정학적 산물” (Gudynas, 2009; Machado Araoz, 2013)

(계속)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

2.2 채굴주의와 신채굴주의 (neo-extractivism)

- 다변화 되지 못한 (거의 단품종 원자재) 생산 구조와 세계 경제에 종속된 자원 공급지
- 결국 (신)채굴주의는 자연의 채굴과 소유를 기반으로 한 발전 양식. ‘생산 방식’이 아닌 자원(자연)의 ‘소유 방식’
- 환경, 생태적 관점: 대규모의 집약적, 경쟁적 자원 채굴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파괴
- 특정 시기에 한정된 직선적 생산-소유 방식이 아닌 반복적, 주기적 방식 (학자에 따라 제3세대, 제4세대 등으로 분류) 즉, 연속된 환경 파괴로 인한 복구, 재생의 어려움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

2.3 신채굴주의와 상품 컨센서스

- 신채굴주의: 전통적 채굴주의와 달리 2000년대 후반 이른바 ‘핑크 타이드’ 시기의 채굴주의를 지칭
- 이전 시기와 달리 자원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 추구
사회 정의 차원의 분배와 양극화 해소 기여
(이로 인해 ‘신채굴주의’ 정의에 반대하는 학자들 존재)
- 진보적 정부 시기에도 자원 개발과 1차 상품 수출 의존
cf. 상품컨센서스: 신자유주의 하의 워싱턴컨센서스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는 상품컨센서스로 회귀함. (Svampa, 2019)

(계속)

II. 라틴아메리카와 신채굴주의

2.3 신채굴주의와 상품 컨센서스

- 자본과 기술력 부족: 국제자본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및 환경 규제 완화
- 세계 시장의 원자재 가격에 좌우되는 경제의 취약성
- 대체로 ‘자원 매장지 = 원주민 거주지’라는 현실은 불변
- 원주민 거주지임에도 자원 개발 이전에는 가치 없는 ‘불모지’,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 지배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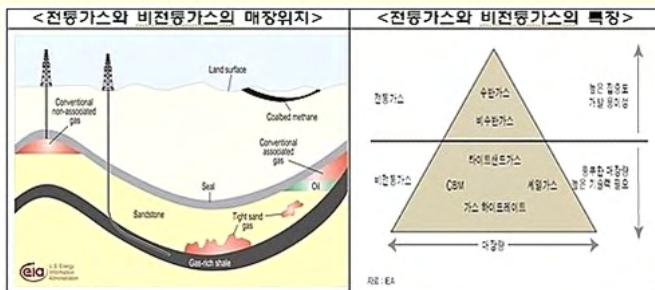
3.1 셰일 개발의 명암

➤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셰일층(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생성된 퇴적암) 내에 갇혀 있는 액체탄화수소를 ‘셰일오일’, 천연가스 형태를 ‘셰일가스’라 부름

➤ 비전통적 개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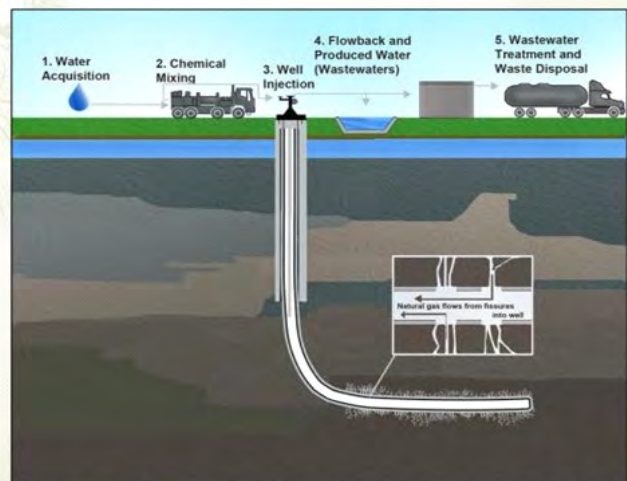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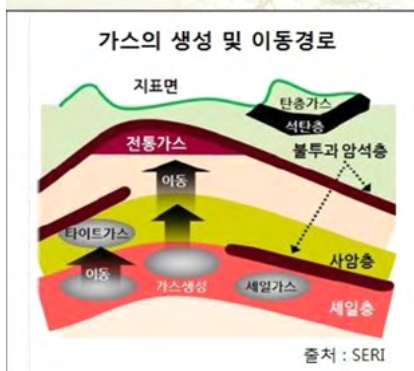
기존의 원유, 가스 채굴 방식: 전통적 개발 방식
원유보다 더 심층에 산재해 있어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king),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등 비전통적(unconventional) 방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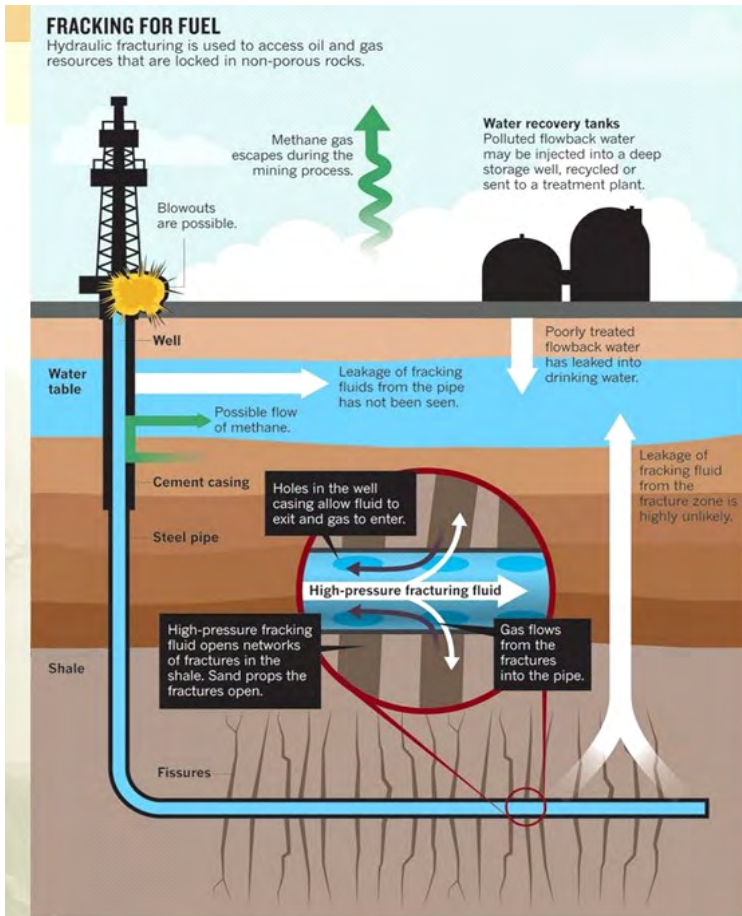
비전통가스 생산량:

- 2000-2017년 기간 4.3 배 증가.
 -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가스의 비중 급속한 증가세 (8% → 23%)
- (출처: KIEP, 2019)

자료: Survey of Energy Resources: Focus on Shale Gas, World Energy Council 2010, pp.8



수평시추법과 수압파쇄법이 적용된 셰일가스 채굴공법. 인위적으로 만든 셰일층 균열 사이로 셰일가스를 빠르게 채굴할 수 있다. ©public domain



세일 개발의 위험성

Fracking Wells in Western Wyoming Hide,

Fracking infrastructure. Illustration from article in *Nature*, Sept. 15, 2011, 'Natural Gas: Should fracking stop?', by Robert W. Howarth, Anthony Ingraffea, & Terry Engelder.

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477/n7364/fig_tab/477271a_F1.html

<Risks and Concerns of Fracking>

1.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2. Methane pollution and its impact on climate change
3. Air pollution impacts
4. Exposure to toxic chemicals
5. Blowouts due to gas explosion
6. Waste disposal
7. Large volume water use in water-deficient regions
8. Fracking-induced earthquakes
9. Workplace safety
10. Infrastructure degradation

III. 파타고니아 세일 개발

3.2 세일 개발의 문제점

- **토지훼손문제:** 면적당 채굴량 상대적으로 적음.
회수율 높이기 위해 시추공 지속적으로 증가.
저변에는 시추에 필요한 장비, 압축기, 하수처리 장소 등 인프라 설치.
화학물질, 물 등을 운반할 트럭 이동 도로 필요.
- **대기오염문제:** 추출과정에서 상당량의 메탄 누출.
(cf. 메탄: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에 치명적)
운송수단 대량이동에 따른 미세먼지, 화학물질 증발에 따른 오염 등
- **수자원 고갈문제:** 수압 파쇄에 막대한 양의 물 투입
(cf. 시추정 하나 당 약 1500만 리터의 물 사용)

(계속)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2 셰일 개발의 문제점

- **식수원 및 수질 오염문제:** 수압파쇄법을 통해 분사하는 유체에는 물과 모래 이외에 화학물질 다수 첨가. 유체 주입, 회수 과정에서 지하수나 식수원에 화학물질 유입 가능성 상존. 누수에 의한 수질 오염 가능성도 (발암물질, 돌연변이 성 물질, 알레르기 성 물질 등 독성 화학물질 사용)
- **지반 약화 및 지진 유발 문제**
세계 곳곳의 셰일개발지역에서 지반 약화와 지진 발생
-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수압파쇄 과정에서 암석에 갇혀 있던 우라늄, 라듐 등 방사성 물질 방출 우려 (<환경부 보고서>, 2013)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3 아르헨티나의 셰일 정책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국영석유회사(YPF) 국유화 선언
- 탄화수소 주권법 제정(2012): 스페인 Repsol사 보유 지분 51% 강제 수용
(원래 국영기업이던 YPF 1993년 민영화, 1999년 Repsol 인수)
- YPF 국유화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Vaca Muerta의 셰일 개발.

cf. 아르헨티나 셰일 매장량 추정

2013년 미국에너지관리청(EIA) 통계

셰일가스: 802Tcf (1Tcf=1조 세제곱 피트) 세계 2위

셰일오일: 270억 배럴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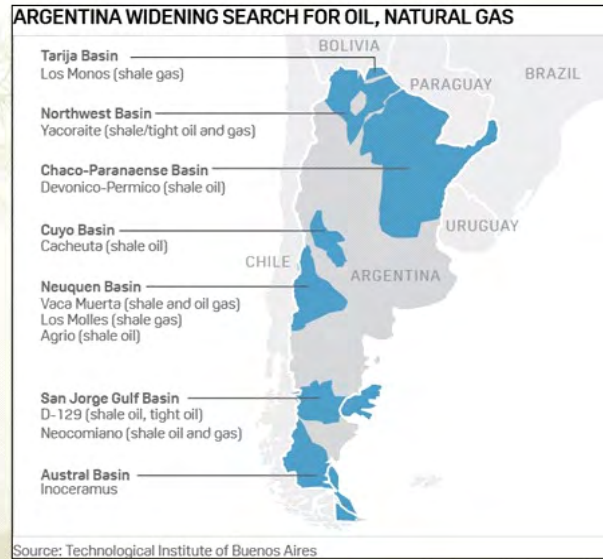
(계속)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3 아르헨티나의 셰일 정책

- 현재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곳: 네우켄 지역
바카 무에르타 지대
- 2019년 통계,
아르헨티나 비전통가스
생산량 중 셰일가스
50% 차지.

cf. 과거 동절기 가스 부족
연간 LNG 220만톤 수입
자국 셰일 가스로 대체
비수기 잉여 물량 수출 추진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4 파타고니아 바카무에르타 지대

- 아르헨티나 최대의 셰일 지대.
- 파타고니아 지역, 네우켄(Neuquén) 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층. 네우켄 분지에 넓게 분포
- 아르헨티나 전체 매장량 중
셰일가스 39%, 셰일오일 60% 차지.

cf. 시추 갱정(well)의 확대
2010년 20여 개.
2018년 880여 개
이 지역에서 개발이 모두 진행될 경우
8만 개의 갱정 필요.



(계속)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4 파타고니아 바카무에르타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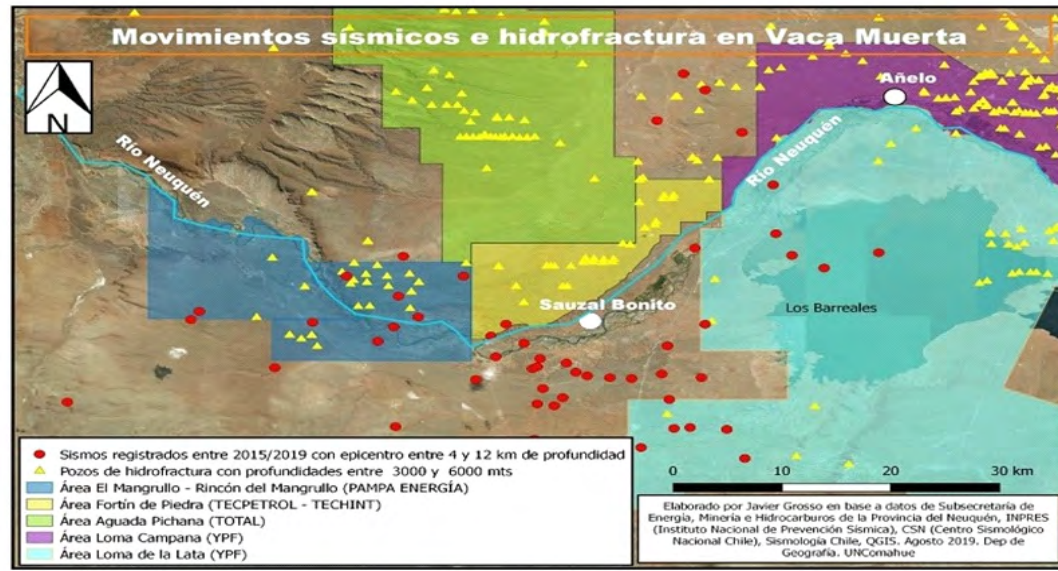
- 셰일 지층 발견: 1930년대 미국 석유 업체 쉘브론의 전신인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오일에 의해 발견됨
- 2012년 YPF와 Chevron 공동 개발 협약 체결
- 아르헨 정부에게 셰일 개발의 가장 큰 숙제는 자본 유치
 - 수출세 인하, 탐사허가 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 적극 추진
 - 현재 쉘브론 외에도 셀, 엑손 모빌, 중국석유총공사 등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 진출
- 또 하나의 과제는 셰일개발 지역의 환경문제, 그리고 원주민과의 관계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5 바카무에르타의 환경문제

- 2017년 로이터: 카시빠진(Kaxipayiñ) 마푸체 원주민 공동체 대표, 가브리엘 체르키 인터뷰
“하루 밤 사이에 당신 마을에 10개의 갱정이 생기고
오염수가 양 옆으로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암발병과 유산율이 증가했다”
- 바카무에르타의 지진과 사고 (2019년)
 - 1년간 바카무에르타 전역에서 130회 넘는 지진 발생
 - 폭발, 유출, 오염, 인적 사고 등 평균 하루 2회 발생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바카 무에르타 지대의 지진발생지 및 갱정 분포도

III. 파타고니아 셰일 개발

3.6 마푸체(Mapuche) 원주민의 저항

-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남부에 걸쳐 거주한 원주민.
 - 강한 정체성. 잉카제국과 스페인인들에 복속되지 않음.
 - 19세기 독립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의해 복속됨
(‘사막의 정복’ 과 ‘아라우카니아의 점령’)
- 대규모 경작,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 밀려 강제적 이주
 - 공동체 분열, 문화 해체 등의 파국
 - 조상 대대로 거주하던 대지에서 뿌리뽑히고 토지 박탈
비가시화 등의 존재적 위기 직면 (Svampa, 2008)

(계속)

III. 파타고니아 세일 개발

3.6 마푸체(Mapuche) 원주민의 저항

- 비극에서 생존한 사람들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 형성
 - 1960년대 서서히 정치적 움직임 탄생.
자신들의 영토권, 원주민 공동체 인정 등을 주장
 - 1997년 “네우켄 2020” 계획 수립. 석유와 가스 고갈 대비,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탈피 추구.
- 그후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 정부의 등장,
 - 자원개발 가속화. YPF와 제휴하여 세일개발 추진.
 - 2000년대 네우켄 주 마푸체 인들, 다시 한 번 탄화수소 개발로 인해 대지의 뿌리 상실 위기

(계속)

III. 파타고니아 세일 개발

3.6 마푸체(Mapuche) 원주민의 저항

- 마푸체인들의 주장:
무조건적인 세일 개발 반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권리, 환경파괴의 중단, 원주민 공동체와 우선적 논의 등을 요구하며 도로 차단, 시설 점거 등 활동 전개
- 마푸체 원주민 저항의 당위성
 -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 (토착민, 부족민 협약)
 - 아르헨티나 개정 헌법 (1994년): 최초로 원주민의 종족, 문화 인정. 교육, 토지의 권리 등 보장.

(계속)

III. 파타고니아 세일 개발

- 마푸체 원주민 저항의 당위성
 -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원주민 생존과 존엄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토지, 종교 및 문화, 교육 등)
 - (cf. ▶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 사용 및 점유했던 토지의
계속 사용, 개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 국가가 원주민이 적용 받게 될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원주민의 동의를 받을 의무.
 - ▶ 국가가 원주민들의 영토 또는 그 영토 내에 위치한
자원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기 전 원주민의 동의를
받을 의무)
- 그러나 현실은 우회적 개발로 인한 원주민 권리의 훼손

IV. 결론

4.1 원주민 권리 인정과 환경 보호의 상관 관계

- 원주민 인구와 토지 점유율:
세계 인구의 5%, 전 세계 토지의 18%
- 원주민 소유의 토지: 삼림 파괴 속도 2~3배 낮음.
생물 다양성의 핵심지역 포함
- 원주민의 토지 인정이 삼림 파괴와 기후 변화에
저비용으로 대응하는 방법 (UNEP, 2017)
“미래 세대를 위해 천연자원의 취약한 균형을 지키는
(원주민의) 지혜는 (...) 환경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일으킬 때 과학과 동등한 역할을 할 것.”
(UNEP 사무총장 에릭 솔하임)

IV. 결론

4.2 (신)채굴주의에서 탈채굴주의로의 전환

-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
현 인류의 위기 원인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 욕망’의 무한한 표출 결과
- 채굴주의에 기반을 둔 발전주의에 대한 성찰과
탈채굴주의(post extractivism)로의 신속한 전환 필요
- 획일적인 하나의 세계(universe)에서 다양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pluriverse)로의 전환 (Escobar, 2017)
 -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간-비인간,
문화-자연, 서구-비서구, 근대-전근대 등의 이분법적 사고의
전환 시급.

V. 참고문헌

- Acosta, Alberto. 2012. “Extractivismo y neoextractivismo: dos caras de la misma maldición”. *Ecoportal*.
- Escobar, Arturo. 2017. *Designs for the Pluriverse. Radical Interdependence, Autonomy, and the Making of Worlds*. Duke Univ. Press
- Galeano, Eduardo, 1973. *Open Veins of Latin America: Five Centuries of the Pillage of a Continent*. Monthly Review Press.
- Gudynas, Eduardo. 2009. “Diez tesis urgentes sobre el Nuevo extractivismo”. In Jorgen Schuldt et. al. *Extractivismo, Política y Sociedad*. Claes.
- Machado Araoz, Horacio. 2013. “Crisis ecológica, conflictos socioambientales y orden neocolonial. Las paradojas de Nuestra América en las fronteras extractivismo”. *Revista Brasileira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3, num.1. 118-155.
- Radovich, Juan Carlos. 2017. “Fractura hidráulica y conflicto territorial en la Comunidad Mapuche Campo Maripe, Neuquén, Argentina”. *Revista GeoPantanal*. Num. 22. 89-104.
- Svampa, Maristella. 2009. Cambio de época. Movimientos sociales y poder político. Siglo XXI
- _____. 2015. “Commodities Consensus: Neoextractivism and Enclosure of the Commons in Latin America”. *South Atlantic Quarterly*.
- _____. 2019. *Neo-extractivism in Latin America: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the Territorial Turn, and New Political Narratives*. Cambridge Univ. Press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como desventaja de los pueblos indígenas ante el Covid 19

Gerardo Gómez Michel

(Instituto de Estudios Iberoamericanos Universidad de Estudios Extranjeros de Busan)

Introducción

La presente pandemia del Covid-19 ha puesto de manifiesto (nuevamente) una situación adversa que han sufrido los pueblos indígenas de América Latina desde tiempos de la Conquista: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Si bien puede parecer lógico que, ante la emergencia sanitaria que impuso el nuevo coronavirus en los sistemas de salud nacionales, la primera respuesta de las políticas estatales tuviera al español como lengua de difusión para la prevención e información del avance de la pandemia y los protocolos a seguir, dada la abrumadora hegemonía de este idioma en los países hispanoamericanos, en poco tiempo quedó de manifiesto que en este contexto se agudizaría el problema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bido a la consecuente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representa. Ya desde inicios de la contingencia, en abril de este año, el Mecanismo de Expertos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advertía que “los pueblos indígenas sufrirán de manera desproporcionada debido a las condiciones de precariedad en las que ya vivían desde antes del inicio de la crisis sanitaria”. Por lo que señalaba que los pueblos originarios de la región “necesitarán información oportuna y precisa sobre todos los aspectos de la pandemia, en sus lenguas indígenas y en formatos culturalmente sensibles” (*La Jornada* 2020).

Como expone Claudia Zapata Silva, los últimos treinta años en América Latina se ha dado un movimiento hacia delante en relación con la reivindicación y reconocimiento del aporte social, cultural y político de los pueblos indígenas en América Latina. Situación que se correspondía con un marco legal propicio para este reconocimiento:

También se han suscrito instrumentos jurídicos internacionales, como el Convenio 169 de l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 Trabajo y la Declar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que condicionan la legislación de los 15 países de la región que han ratificado ambos instrumentos hasta la fecha. Hubo también una década de los pueblos indígenas establecida por las Naciones Unidas que acompañó una parte de este periodo (1994-2004). (Zapata Silva, 2019)

No obstante, la autora no deja de señalar que a pesar de la complacencia que algunos informes, como el del Banco Mundial en el 2015, en los que se insiste en una mejoría de la situación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e incluso en una “reducción sin precedente de la desigualdad”, la realidad es que se mantiene una brecha entre la población indígena y la no indígena en Latinoamérica y que esa brecha, incluso reconocida por el mismo informe del Banco Mundial, “es de larga data y que, en lugar de retroceder, incluso se ha profundizado en algunas dimensiones”, como el de la

pobreza endémica que sufren los indígenas, cuestión que el mismo reporte indica con las siguientes cifras: "la pobreza afecta al 43% de los hogares indígenas de la región —más del doble de la proporción de no indígenas— y el 24% de todos los hogares indígenas vive en condiciones de pobreza extrema, es decir 2.7 veces más frecuentemente que la proporción de hogares no indígenas"(Zapata Silva, 2019: 13).

Como es evidente, a esta situación de pobreza debe agregarse el estado de exclusión que sufr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en relación con los servicios básicos como son, por ejemplo, el agua corriente y hospitales, que en las condiciones actuales planteadas por la emergencia de la pandemia se vuelven factores de inminente peligro para la supervivencia. Sobre esta situación de falta de infraestructura, por demás conocida, la periodista zapoteca Diana Manzo advertía desde marzo de este año lo que se ha venido comprobando en los últimos meses, que la "situación de abandono —de los pueblos indígenas— son tierra fértil para la propagación del Covid-19".(Manzo, 2020 sin pág.) Los datos comparativos, que nuevamente señalan la brecha mencionada, no dejan lugar a dudas de la terrible desigualdad:

E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la Política de Desarrollo Social detalla en su informe del 2015, que en Oaxaca la cobertura de infraestructura de agua potable en comunidades indígenas como la de San Dionisio del Mar, *fue de 87.2* por ciento, menor al promedio nacional, lo cual significa que vivirán esta pandemia sin gozar de este líquido indispensable para su salud. (Manzo, 2020)

Pero al hablar del peligro que representa la pandemia para su comunidad, Manzo no solo denuncia la falta de agua sino que vuelve a la cuestión de la necesidad de información sobre la emergencia: "los abuelos y abuelas de mi comunidad zapoteca no entienden mucho de lo que pasa (...) Ellos no saben que es Covid-19, no saben del nuevo coronavirus, ni de los anteriores, solo dicen 'la enfermedad' (...) Pero los reclamos en toda la región son similares. En Brasil, en Venezuela, en Colombia. No saben qué hacer, nadie les informa"(Manzo, 2020). Y es que a pesar de que son innegables algunos esfuerzos de los gobiernos, como en este caso en México donde desde mayo el "Instituto Nacional de los Pueblos Indígenas creó una guía de atención a los pueblos indígenas en el contexto del Covid-19" que tiene como objetivo, según lo señala la institución, el de "salvaguardar la vida de la población que se encuentra en los pueblos indígenas y afroamericano en condiciones vulnerables, por ello continúa impulsando acciones que contribuyan en la disminución de riesgos por la pandemia del Covid-19", (*La Jornada* 2020) en la práctica estos esfuerzos y buenas intenciones estatales pueden verse obstaculizados por una situación que apunta a una continuada y al parecer extendida negligencia por parte de sectores o actores sociales y políticos que buscan perpetuar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imperante. Por ejemplo, volviendo al relato de la situación en Oaxaca que hace Diana Manzo, señala a este respecto que:

Para comenzar en nuestro caso, solo hasta hace pocos días y gracias a la intervención de una juez, se ordenó al Gobierno Federal a difundir las medidas

sanitarias en lenguas maternas para pueblos como el tzotzil, tzeltal, zoque y chol. En mi comunidad, la medida se aplicó también al zapoteco, la lengua de mi pueblo y con más de 60 variaciones, pero la distribución ha sido limitada. (Manzo 2020)

La distribución limitada de información a la que se refiere Manzo no deja de apuntar a un contexto nacional (y latinoamericano en general) en el que los pueblos indígenas siguen siendo un sector social al que se le ubica siempre en los márgenes de la comunidad nacional y, en consecuencia, se perpetúa su constante estado de exclusión y desigualdad.

Es interesante observar que uno de los grupos que mayor trabajo de cooperación (al mismo tiempo que de denuncia) frente a la situación que plantea la pandemia para los pueblos indígenas son artistas, creadores, intelectuales y académicos, muchos de ellos parte de las comunidades en cuestión. Un ejemplo es el artista plástico oaxaqueño Filogonio Naxín que a principios de agosto presentó virtualmente su exposición "Está cambiando el corazón de la Tierra", con la que propone "acceder al derecho de disfrutar del arte, y en esta ocasión acentuar la celebración del Día Internacional de los Pueblos Indígenas para insistir en la difícil situación que están viviendo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de México al enfrentarse a la pandemia del coronavirus" (*La Jornada* 2020).

La preocupación que expresa el artista oaxaqueño tiene un referente por demás acuciante en el desarrollo que hasta la fecha va mostrando la pandemia en México ya que, según un informe de la Secretaría de Salud, el porcentaje de muertos por complicaciones del Covid-19 en relación con el número de contagiados es casi un 50% mayor en poblaciones indígenas que en el resto de la población del país y en algunos casos mucho mayor.

Hay 43 localidades donde los decesos representan la mitad de los casos confirmados y se concentran en las regiones del sur-sureste (maya), centro (mixteca) y noreste de la República. El informe reconoce que la dificultad en el acceso a los servicios de salud también condiciona la disponibilidad de pruebas de diagnóstico del SARS-CoV-2 y la atención en las comunidades (*La Jornada* 2020).

Si bien es evidente que la falta de servicios e insumos médicos incide directamente en el porcentaje de mortalidad de los enfermos graves de Covid-19, también es evidente que la falta de información en lenguas indígenas acerca de medidas y protocolos de prevención aumenta considerablemente la posibilidad de contagio en primer término. Conscientes de esta situación, colectivos de artistas se dan a la tarea de mitigar este problema en algunos casos en colaboración con proyectos estatales. Ya desde inicios del brote masivo de contagios en el país se podía constatar esta labor. En abril, por ejemplo, sumando esfuerzos con el gobierno,

Poetas, escritores y traductores hablantes de lenguas originarias se sumaron a la campaña lanzada en redes sociales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ígenas

(Inali) para difundir información de prevención contra el Covid-19 *en al menos 12 de las 68 que se hablan en el país*, en la que el gobierno federal llama a este sector de la población a resguardarse en casa para evitar contagios. Los gobiernos de Hidalgo y Oaxaca, así como la Universidad Veracruzana y la Academia Veracruzana de las Lenguas Indígenas también elaboraron material para promover la prevención, en el que se recomienda en otomí, náhuatl, popoluca de la sierra, huasteco, tepehua, totonaco y zoque el adecuado lavado de manos, estornudo de etiqueta, la necesidad de mantener sana distancia y evitar salir de casa. (*La Jornada* 2020)

Sin pretender minimizar este tipo de iniciativas gubernamentales, que en definitiva se suman a la estrategia y lucha que el estado tiene para combatir los efectos de la pandemia en todo el país, hay dos aspectos que resaltan en la información que ofrece la cita anterior. Por un lado, la voluntad del colectivo de poetas, escritores y traductores indígenas para colaborar en el proyecto que convocó el 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ígenas, aspecto positivo de ambas partes. Pero por otro lado, se puede observar que a pesar de estas buenas intenciones, en la práctica se vuelve a confirmar el hecho de que a pesar de que México es una sociedad oficialmente reconocida como multicultural y plurilingüística, el proyecto lamentablemente tiene alcances limitados, ya que aborda solo 12 de las 68 lenguas que se hablan en el país, es decir, alrededor de un 17%, sin contar los cientos de variantes de las mismas. Se trata en definitiva de una situación por demás compleja, pero cuando hablamos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como decíamos al inicio, la pandemia por lo trágico e impactante de sus efectos ha venido a poner de relieve nuevamente, se trata en realidad de uno de los legados coloniales que persisten hasta el día de hoy en las sociedades latinoamericanas y que se traduce en una realidad como la que señala Luisa Rocha Arrieta, investigadora del Departamento de Farmacobiología del Centro de Investigación y de Estudios Avanzados (Cinvestav), quien encabezó un proyecto lanzado en julio en colaboración con varias universidades e instituciones de educación superior de México y Estados Unidos para preparar materiales informativos y audiovisuales en lenguas indígenas para informar acerca del coronavirus, cuando aclara que “si bien el país cuenta con suficiente información sobre estas recomendaciones, *ésta está predominantemente en español y en plataformas digitales*, razón por la cual no es del todo accesible para la población que únicamente habla una lengua indígena o habita en comunidades sin servicio de Internet” (*La Jornada* 2020).

Es decir, aunado a la pobreza y falta de acceso a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vuelve a mencionarse el problema constante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lo que ha generado desde tiempos de la Colonia un frente de resistencia des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A continuación veremos algunos aspectos del desarrollo de este frente, sus avances y retrocesos, las condiciones que promueven su solución o la obstaculizan, y algunas de las estrategias que los propios hablantes indígenas han desarrollado para resistir y mantener el legado inmaterial que representan sus lenguas nativas en el contexto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aún persiste en América Latina.

Bibliografía

- La Jornada* (2020). "Indígenas sufrirán de manera desproporcionada el Covid-19: experto", 7 de abril.
- La Jornada* (2020). "IMPI lanza guía para la atención del Covid-19 a los pueblos indígenas", 9 de mayo.
- La Jornada* (2020). "Filogonio Naxín presenta muestra por día mundial de pueblos indígenas", 8 de agosto.
- La Jornada* (2020). "En 43 municipios indígenas, la mitad de los enfermos de Covid muere, revela estudio", 22 de septiembre.
- La Jornada* (2020). "Escritores, traductores y poetas apoyan campaña en lenguas indígenas", 2 de abril.
- La Jornada* (2020). "Preparan en lenguas indígenas materiales audiovisuales para informar acerca del coronavirus", 10 de julio.
- Manzo, Diana (2020) "El virus desnuda una deuda de más de 500 años", *CONNECTAS Plataforma periodística para las Américas*, <https://www.connectas.org/virus-desnuda-una-deuda-mas-500-anos/> (consultado en 30.09.2020)
- Zapata Silva, Claudia (2019), *Crisis del multiculturalismo en América Latina, conflictividad social y respuestas críticas desde el pensamiento político indígena*, Bielefeld University Press: Berlín.

난민, 혐오, 전염병: COVID-19 전후 콜롬비아 일간지 엘 띠엠프(El tiempo)
신문기사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손지혜·한기덕·윤인진

I. 서론

1. 들어가며

•Q 외국인혐오(Xenophobia)란?

- Mayadas와 Elliott(1992)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와 경멸'로 정의
- 호스트 커뮤니티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반응이며, 일방적인 혐오가 아닌 근거 있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
-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 내집단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는 '외집단'으로 경계하며 내집단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하게 되는 현상
- 현실적 집단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제한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특정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내집단 내에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고 외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

1. 들어가며

•Q 외국인 혐오는 왜 발생하는가?

- 그룹 간의 관계가 경쟁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두드러지는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타자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원망과 증오를 표현
- '나', '너'를 구분하는 틀을 만들어 내가 속한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대시하고 이유 없는 공격을 퍼부어 나를 포함한 범주의 당위성을 나타냄
-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감하는 힘의 약화를 초래. 혐오와 공감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혐오 감정이 강화되면 필수로 공감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음

1. 들어가며

•Q 난민? 외국인 혐오의 대상?

- ‘초대받지 않은 손님’
- 도착 직후부터 난민 수용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
- ‘나’보다 약하다는 인식은 저항할 수 없는 ‘난민’이라는 낙인은 공격과 혐오의 정당성으로 인식

1. 들어가며

•Q COVID-19 확산의 공포 그리고 외국인 혐오

- 원망과 분노의 책임을 떠맡을 희생양을 찾을 수 밖에 없음: 소수자와 약자는 그들이 찾는 적절한 희생양
- 실제로 정부 지도자나 고위 관리들로부터 중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표현들이 직·간접적으로 조장됨(Human right watch, 2020).
- 전염병 전파에 매개 역할을 한 이주민·난민들도 포함
-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의 양, 추천수, 찬성·반대 의견 표시는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임
-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언론을 통해 형성.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이 가능해 뉴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1. 들어가며

•Q 베네수엘라 난민들: 혐오의 대상?

- 2015년 전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여 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현재 약 510만명이 주변국을 떠도는 것으로 집계(UNHCR, 2020)
- 끝없이 이어지는 난민 행렬에 이미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De León Vargas, 2018)
-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실제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각 거주국의 격리조치에서 소외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UN, 2020)
-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지원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는 이들에게 치명적임.
- 전염병 확산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

1. 들어가며

•Q 콜롬비아의 언론에 비친 베네수엘라 난민은?

-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 들인 나라임
- 콜롬비아는 독립 시기에 한 나라였음. 여전히 서로를 '형제 의 나라'로 인식.
- 난민에 대해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지속하고 있음
- COVID-19 전·후를 비교 하였을때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보도가 큰 차이가 없음
- 여성 난민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도하였고, 약자로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부당함을 알리기도 함
-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와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1. 들어가며

•Q 연구 주제

- 콜롬비아의 주요 일간지인 엘 띠티empo(El tiempo)에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에 대해 COVID-19 전후로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도하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
- 이 기사들의 댓글 또한 COVID-19 전후로 비교 분석
- COVID-19 발생시기인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2018년 12월~2020년 11월, 24개월)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검색
- 언론의 관점과 독자들의 관점은 일치하는가?

II. 선행연구

1. 이주민 혐오

- 국가의 '의미로서 경계' 안의 '국민-시민'은 국가에 의해서 인권이나 생존권을 보장받고, 귀 속성과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가의 '의미로서 경계' 밖의 난민은 설사 합법적으로 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별거벗은 생명으로 된다. 그래서 비합법적으로 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넘은 난민은 '의미로서 경계' 안의 '삶의 형태'를 가지지 못한 '별거벗은 생명'이 됨 (하용삼·배윤기, 2013: 31-32)
- 민족, 국가, 계급, 성 등과 같은 추상적 공간은 언제나 '동질성'을 강조한다. 국가 경계는 말과 서류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국민·민인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의미로서 경계'에 속하게 됨. 난민은 '의미로서의 경계'에서 차별·배제 됨. 결국 난민은 국가라는 물리적 경계와 국민이라는 범주의 의미로서의 경계 안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의 권리 또한 보장 받지 못함.

2. 질병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논의

- 질병의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질병에 대한 공포가 유색인종 또는 이민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지며, '질병=외부자'라는 의학적 편견을 낳고, 이는 이민 정책과 공중보건 정책, 나아가 일터나 학교와 같은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침(김수경, 2020)
- 바이러스에는 국적이 없지만 감염병에 국적 또는 인종을 부여하고 감염병을 '우리'가 아닌 '그들'의 것으로 타자화(otherization)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관행
- 기생충 스트레스 이론(parasite-stress theory): 외부인(out-group)과의 접촉이 낮을수록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공포가 높을수록 타인종을 배제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짐.
- 언론은 이민자, 난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종 차별적이고 혐오 적인 이야기를 강화하는데 촉매 역할을 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공포심을 약자에게 더욱 악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자 함 (Hennebry & KC, 2020).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일간지 엘 띠티엠프(El tiempo) 에서 ‘Refugiados venezolanos’ 혹은 ‘refugiados’로 검색하여 베네수엘라 난민에 관한 뉴스 기사와 댓글을 수집
- 검색 기간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2018년 12월~2020년 11월, 24개월)
- 다수의 검색으로 인하여 중복으로 수집된 뉴스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총 기사 수는 220개(코로나 이전 기사 수: 60개, 코로나 이후 기사 수 : 160개)이고, 댓글은 3,842개(코로나 이전 댓글 수: 1,558개, 코로나 이후 댓글 수: 2,284개)임

2. 분석 방법 및 절차

- 텍스트 마이닝기법: 많은 양의 비정형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수집 및 정제: 엘 띠티엠포 홈페이지 -> 'Refugiados venezolanos' 'refugiados' 검색 -> 제목/본문내용 수집 -> 중복 내용 제거 -> 저장
- (2) 분석자료 가공: R 프로그램 활용, 명사 빈도 내림차순 데이터프레임 출력 -> 불용어 제거
- (3) 분석 및 해석: 빈번하게 사용된 키워드 & 뉴스기사의 직/간접적인 인용을 통한 분석

IV. 분석결과

EL TIEMPO 기사 COVID-19 이전

- 이주민, 이주, 니콜라스 마두로, 난민, 위기, 국제, 베네수엘라 여성, 국경, 도움, 후안 과이도 등 상위빈도
- 베네수엘라 난민을 언론에서는 이주민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들의 행위인 이주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추출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 비난, 위기적 상황, 국경을 넘는 이주의 행위, 이 위기를 공론화 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난관을 타개할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의 행보에 대한 보도로 인해 상위 빈도를 차지
- 영내 국가 간의 연합, 인도주의적 해결, UNHCR(UN난민기구), 열악한 위생 상황으로 인한 건강 문제, 군대의 국경 통제, 난민들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온정적인 지원, 콜롬비아 대통령인 이반 두께, 난민들의 인권 등의 텍스트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기구인 UN을 통해 지원을 유도
- 치안, 폭력: 난민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치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도하였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는 난민들이 역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도

EL TIEMPO 기사 COVID-19 이전

-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됨을 보도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이유 없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것을 보도한 기사들이 검색
- 이웃, 보호, 체류는 베네수엘라가 이웃국가이자, 이웃국가의 국민인 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체류를 허가
- ‘여성’: 여성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나 이들의 상황을 자주 보도함
- 유럽은 난민들에 대해 임시보호소, 보호시설에 수용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 함을 보도하였고, 콜롬비아는 유럽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호소
- 사회 전반에 걸친 난민에 대한 혐오를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난민에 대해 온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

EL TIEMPO 기사 COVID-19 이후

-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음
- 또한 '난민들'의 텍스트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남
- 네트워크(redes)는 35번 검색되었는데, 이는 난민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귀환을 계획하고 재입국하는 상황에 대해 보도
- 격리조치로 인해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한 귀환(귀국)조치를 보도
- '전염'이 15번 언급되었고, 혐오의 빈도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12번 검색
- 첩보활동은 베네수엘라 군 출신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콜롬비아 내부의 군 시설에 대한 정보를 마두로 대통령 직속 군부대에 보고하였던 사건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11번 검색 됨. 이 기사의 댓글에는 약 4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주 내용은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을 내쫓아라(Expulse a todos los venezolanos)',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Vete tu casa pronto)'의 댓글이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음
-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어휘는 크게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EL TIEMPO 기사 댓글 COVID-19 이전

-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두께, 베네수엘라 국회 임시 의장 후안 과이도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검색됨
- Venecos(베네수엘라 사람 비하), 부정부패 혐의자(Currupto), 지적장애인(Mamertos), 소매치기(Ratas), 강도(Atracadores), 쓰레기(Basura), 바보(Bobo), 공산주의자(Comunista), 도둑(Ladrones), 석유업자(Petronero), 포퓰리스트(Populista), 테러리스트(Terroristas), 한량(Vagos)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비하
- 난민과 관련 없는 아이다 메를라노(Aida Merlano)를 'amiga de Maduro(마두로의 친구)', 'Putas madres Merlano' 로 비난
- 민족해방군, 콜롬비아 마약 무장단체 등 이들 무장단체들이 조속히 난민들을 처단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댓글들도 검색
- '카더라' 방식의 댓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난민들이 콜롬비아 시민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며, 이들을 범죄의 근원으로 강도짓을 일삼고 있다

EL TIEMPO 기사 댓글 COVID-19 이전

- 국민의 세금이 난민들을 위해 쓰인다면서 세금을 콜롬비아 국민들에게만 쓸 것을 촉구함
- 국경을 넘은 행위를 '침입, 침략'으로 규정
-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
-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일부 댓글도 발견됨

EL TIEMPO 기사 댓글 COVID-19 이후

-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비하하는 Venecos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남
- 두 지도자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댓글이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견
- 이들에게 온정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댓글도 높은 빈도로 검색
- 이들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댓글도 높은 빈도로 발견
- 이전과의 차이점은 이들을 비하하는 명칭들인데, 마두로+당나귀인 maburro, 소매치기, 도둑, 살인자, 정신 박약, 돼지, 창녀, Venezambo(베네수엘라 흑인 비하), Venezambia(베네수엘라 흑인 비하) 등이 높은 빈도로 검색됨
- 이전 댓글에서는 인종 차별적인 비하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이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다양하게 발견
- 마약사범으로 치부하고 난민 모두 마약 전문 판매책으로 매도

EL TIEMPO 기사 댓글 COVID-19 이후

- 베네수엘라 여성에 대해 ‘창녀(Puta)’로 매도하며 이들이 감염원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을 ‘카더라’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미녀 공화국’인 베네수엘라 여자들을 죄의식 없이 강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혐오성 댓글 검색
- 성적 비하 발언이나 여성의 ‘성’을 쉽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남성들의 월권으로 인식하여 타 남성독자들로부터 공감

V. 결론

5. 나오며

- 이민자, 난민에 대해 온정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보도하고 있으며, 재난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온정적인 관점을 유지
- 기존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외국인 혐오의 범주 안에는 난민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끈끈한 동질감은 이를 뛰어넘는 양상을 보였음
- ‘형제의 나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음
-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재난 상황 이후 인종·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이 더욱 과격해 졌는데, 저항 할 수 없는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에 이들은 최적의 희생양으로서 독자들이 인식함
- 댓글에서 난민을 강도, 소매치기, 지적장애, 정신박약 등 근거없는 혐오성 낙인을 노골적으로 표현
- 한 국가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신문사의 관점과 논조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의

5. 나오며

- 주요 언론사의 관점과 논조가 일반국민의 인식과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주요 언론사의 신문기사 분석은 여론 주도층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 신문을 읽는 독자층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독료를 낼 수 있는 독자라 가정할 때 중산층 이상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 전반에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신문 기사와는 정반대의 노골적인 난민 혐오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난민과 이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1부 세션2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좌 장]

- 이재학(고려대)

[발 표]

- 조희문(한국외대)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권(COVID-19 and the right of nature)"
- 조영현(부산외대)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Buen Vivir 담론과의 관계 연구"
- 김영철(부산외대) "브라질 원주민 토지 소유권 문제"

[토 론]

- 강정원(성균관대), 김윤경(한국외대), 이미정(한국외대)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권

COVID-19 and the Right of Nature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COVID-19는 그 동안 국제사회를 강타했던 일련의 바이러스 공포에 비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간 사회는 유사 이래 최고수준의 과학문명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작 신종바이러스의 공격에는 무방비 노출상태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공포를 안겨준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였다. HIV는 원숭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고, 그 원인은 원숭이의 도축을 통한 전파가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HIV는 혈액이나 체액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그 위력에 불구하고 인간의 사회활동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다. 20년이 안되는 동안에 벌써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와 COVID-19에 이르기까지 공포의 바이러스 공격만 4차례 받았다. 접촉감염을 넘어서 호흡기감염으로 번지면서 인간의 이동성에 제한을 받았다. 그나마 사스와 신종 플루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메르스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자체가 없었고, 이제 COVID-19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스, 지카, 에볼라와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닭과 돼지 및 소에까지 집단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변변한 치료제나 백신개발도 없이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매몰 처분해야 했다. 이러한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70%이상은 동물로부터 전염된다고 한다.¹⁾ 이러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는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없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대에 유행하는 전염병인 신종 감염병은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로 지구환경을 변화시킨 부작용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인간의 재앙을 감수할 정도로 현대의 발전이 인류모두에게 가치있는 것일까?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는 제어할 수 없는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심하게 말하면 인간중심의 과학발전은 자연환경의 파괴이고 인간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은 인간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²⁾ 미생물은 숙주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종과 돌연변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문제는 독성과 전파력인데, 독성뿐만 아니라 인간환경이 전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소와 돼지 그리고 닭과 오리 등의 가축 사육은 갈수록 공장형 밀집형 집단형 방식으로 변해왔다. 일부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한다고 해서 지구전체의 사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도시에서 아파트 등과 같이 밀집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환경에서는 동물도 인간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변종을 만들어 동물과 인간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기후온난화, 자연환경파괴, 밀림파괴, 인구증가와 이동, 이동수단의 혁신적 발달 등은 모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조장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중심의 지구개발이 만들어낸 팬데믹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서곡일수도 있다. 호기심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중심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인 것이다.

동 논문은 인간중심주의는 절제되고 책임있는 지구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인간사회의 법체계를 생태중심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생태중심주의의 법적 표현이 자연권(right of nature, derecho de la naturaleza)의 인정이다.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소송당사자 능력까지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기업과 같은 법인(legal person)에게 권리능력과

1) 윤정현,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11.

2) 장철훈,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6.

소송능력을 부여했듯이 같은 논리에서 자연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있다. 환경법은 인간편의에 의해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환경법이 잘 작동하여 환경보호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온난화, 밀림파괴, 감염병 팬데믹 등 현재의 환경법제로는 인간중심의 자연파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자연권에 관한 논의는 7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특히, 에콰도르 헌법에 규정된 자연권(right of nature, derecho de la naturaleza)은 자연권법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실정법에 자연권을 규정한 것이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조인들은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자연권을 규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연권에 대한 철학적 담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법조인들의 자연권 해석도 자연스럽게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팬데믹은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결과물이고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연파괴가 진행되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둘째, 현존의 법체계는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자연을 인간발전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환경법과 국제법 등도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세계화된 팬데믹 현상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이것은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 그리고 생태중심으로 인간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권의 도입은 이러한 생태중심의 인간사회로 방향 전환하는데 하나의 출발점이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자연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팬데믹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권의 도입은 인간의 법률사회에 엄청난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 내지는 자연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인간 재앙의 빈도가 낮아질 것이다.

II. COVID-19 팬데믹과 자연파괴

자연과 팬데믹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COVID-19가 왜 발발했고,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고, 치료제와 백신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동 논문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COVID-19의 발생과 전파가 인간의 자연파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생원인과 전파경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COVID-19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자연에서의 동물 삶의 터전이 파괴되면 될수록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파괴를 통한 기후변화는 동물의 생활터전을 교란시켰고, 이러한 생태계 교란행위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세계적 전염병이다. 지구를 멈춘 COVID-19는 자연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을 경고하는 자연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확실히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작동을 한다. 인간의 신체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상호 조화롭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한다. 아프다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자연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의 일원인 인간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서 이러한 생태계 교란행위를 해왔다. 산림파괴, 지구온난화, 이를 통한 야생동물과의 접촉 등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동물 고유의 병을 옮겨오고 있다. 산림파괴를 통한 야생과의 접촉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야생동물들의 전염병들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인간으로 옮겨지고 있다.

팬데믹은 또 다른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자연파괴의 가장 큰 유형은 산림파괴

(deforestation)이다. 예를 들어 COVID-19로 도시생활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지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산림파괴를 통한 경작지의 확보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COVID-19의 영향으로 자원개발에 기계화와 자동화가 더 가속화되면 산림파괴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접촉이 늘어나면 COVID-19와 같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다양한 전염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전염병과 자연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자연파괴의 결과물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나타난다. 기후변화도 자연환경의 변화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산림 등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지구생태계의 변화가 온다.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절에 따른 온도가 균형을 이루는데 기후변화는 인간사회가 인위적으로 이러한 자연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감기가 주로 겨울에 걸리는 것은 감기바이러스가 이러한 계절과 온도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라는 속담도 감기의 속성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에어컨 등 여름에도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COVID-19도 숙주로 인간을 택한다면 인간사회에 정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할 것이다.

이미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COVID-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을 대하는 인간사회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구환경을 인간 중심으로 설계한 현존의 접근법은 한계에 달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으로써 자연환경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을 사용하고 그만큼 자연에 대해 보답이 있어야 한다.

III. 팬데믹과 인간중심적 법체계의 한계

COVID-19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COVID-19의 의미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풀어낸 논문도 다수 발견되는데, De Vido(2020:2)는 팬데믹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으로 구축된 국제법을 반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occasio)로 보고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제법 체제로는 팬데믹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도 생물과 무생물 등을 포함하는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연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생태중심주의는 법영역의 밖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법학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촉발은 법제도내에 자연을 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였다. 현행법은 통상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법인격의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연권(right of nature)이다.³⁾ 이러한 논의는 환경보호론자나 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법제도내에 들어옴으로써 자연권이론은 좀 더 구체화되었고, 법학계에서 생태중심주의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고 있다.

자연권은 중남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다. 아직도 다양한 인디오 부족들이 존재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등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 다문화 국가(pluri-nacional, pluri-cultural state)임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이민국가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혼합되어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권과 환경은 중남미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있다.

미주인권법원의 존재는 중남미 인권법의 발달에 큰 뒷받침이 된다. 미주인권법원의 국제법이 국내

3) 조희문 (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446-7.

헌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미주인권법원은 국제인권기 국내법질서에 우선한다는 국제인권기 우위를 판례를 통해 확립해왔는데 이러한 국제인권기 우위는 자연권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제26조는 “제3장 경제, 사회 문화권리”의 단일조항으로 미주인권법원은 동 조문을 기반으로 건강한 환경을 인권으로 보고 이러한 건강한 환경은 독자적 권리임을 인정했다.⁴⁾ 즉, 건강한 환경인권(healthy environment as human rights)’을 인정한 것이다. 미주인권법원은 2017년 자연과 인권의 관계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2020년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건강한 환경인권을 확립했다.⁵⁾ 법원의 논리는 건강한 환경인권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보호는 당장 인간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이 생명체에 주는 중요성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기존논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비록 법원이 생태중심(ecocentrism)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환경권(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이 인간에게 중요한 인권이라는 점을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이고, 건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자연이 보호된다는 논리로 애둘러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인간중심(anthropocentrism)으로 논리전개를 했지만, 자연보호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간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이 피해를 입으면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생태중심적 논리전개도 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2020년 판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주인권법원의 판결 (Aboriginal Community of Lhaka Honhat v Argentina, Series C No. 400,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Feb 6, 2020))

미주인권법원은 2020년에 환경권에 관한 첫 판결을 했다. 미주인권법원과 환경은 조금 생소한 듯하나 사건을 파악해보면 환경인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다. 미주인권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역사적 토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인디오 공동체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동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을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과 연결하여 인권의 범위를 환경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동 사건에서 원고인 인디오 공동체가 그들의 영토내에서 불법 벌목과 기타 위대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법적 활동으로 인디오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동질성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건강한 환경인권에 관해 이미 2017년 권고적 의견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미주인권협약의 제26조(점진적 현실화 원칙)에서 건강한 환경권은 독자적 권리(autonomous right)로 다른 인권의 구성요소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즉, 건강한 환경권은 그 자체로 인권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정부는 인디오 공동체의 재산, 문화적 동질성, 식량과 물 등에 관련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되었다. 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인디오 공동체가 거주하는 역사적 지역을 6년내에 청소하고 권리증서를 발급하도록 명했다.

(사실관계)

동 건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 접경하고 있는 약 643,000헥타르의 광대한 지역에서 최소 1629년 이래 거주하고 있는 132개 인디오 공동체들이 결성한 Lhaka Honhat (Our Land) Association이 주장하는 공동체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원고의 주장은 1900년대 초부터 이들 인디오 거주지역에

4) CHAPTER III.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26. PROGRESSIVE DEVELOPMENT.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measures, both intern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those of an economic and technical nature,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by legislation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implicit in the economic, social,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Buenos Aires.

5)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OC-23/17 Advisory Opinion (Nov 15, 2017), and Aboriginal Community of Lhaka Honhat v Argentina, Series C No. 400,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Feb 6, 2020).

6) OC-23/17 Advisory Opinion, para. 180.

비인디오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목장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식량과 물에 접근하는 인디오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⁷⁾

1998년 원고는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에 인디오 공동체를 대리하여 청원을 제출했고, 미주인권위원회는 장기간의 숙고를 거쳐 2006년에 청원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2012.1. 보고서를 채택하여 아르헨티나정부에 대해 해당 피해 인디오 원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으니 사법적 보호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인권위는 동 건을 2018.2.1. 미주인권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의 판단)

미주인권법원은 미주인권협약 제21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공동체 재산권에 대한 분석과 제26조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제25조와 제8조에 기초한 사법적 보호권(재판받을 권리)과 정당한 절차(due process)에 관련된 권리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⁸⁾

(1) 인디오 공동체의 재산권

인권법원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인디오 공동체 재산권의 확인과 이러한 재산권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정부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 동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협약 제21조의 권리는 인디오의 땅에 대한 공동체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확인해주고 인디오들이 토지와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⁹⁾

다음으로, 국가는 인디오 공동체 토지와 천연자원의 보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유효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자문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디오 원주민이 아닌 Creole들이 인디오 영토에 거주를 시작했을 때 인디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문제를 삼았으나 아르헨티나정부는 영토의 권원을 인정하는 토지소유권을 발부해주지 않고 대신 Creole들이 거주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¹⁰⁾ 비록 2007년부터 국가가 Creole공동체와 인디오 공동체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결국 인디오 공동체가 원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토지경계획정이나 이미 정착하고 있는 Creole들에 대한 문제 등 법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7) 판결문, para. 36.

8) para. 91. La Corte efectuará su examen del siguiente modo: 1) en primer término, se referirá al derecho de propiedad comunitaria, analizando también otros derechos que, conforme se ha aducido, han presentado relación con la propiedad en el caso: a.- expondrá algunas consideraciones generales sobre la propiedad comunitaria indígena y luego dará cuenta de los argumentos respectivos de la Comisión y la partes y del análisis del Tribunal sobre: b.- el reconocimiento y determinación de la propiedad, y c.- proyectos y obras ejecutadas sobre el territorio reclamado. Más adelante, abordará: 2) los alegatos sobre violaciones a los derechos de circulación y de residencia, al medio ambiente sano, a la alimentación y a la identidad cultural, considerando también el derecho al agua, y 3) las aducidas vulneraciones a los derechos a las garantías judiciales y a la protección judicial en relación con acciones judiciales iniciadas en el caso.

9) paras.93.

10) B.2.3.3 *Conclusión sobre el reconocimiento y determinación de la propiedad*

167. Como conclusión de todo lo expuesto, la Corte constata que los Decretos 2786/07 y 1498/14 constituyen actos de reconocimiento de la propiedad comunitaria sobre la tierra reclamada. No obstante, el Estado no ha titulado la misma de forma adecuada, de modo de dotarla de seguridad jurídica. El territorio no se ha demarcado y subsiste la permanencia de terceros. Argentina, además, no cuenta con normativa adecuada para garantizar en forma suficiente el derecho de propiedad comunitaria.

168. Por lo expuesto, la Corte determina que el Estado violó, en perjuici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víctimas en este caso (*supra* párr. 35 y Anexo V a la presente Sentencia), el derecho de propiedad en relación con el derecho a contar con procedimientos adecuados y con las obligaciones de garantizar los derechos y adoptar disposiciones de derecho interno. Por ello, Argentina incumplió el artículo 21 de la Convención en relación con sus artículos 8.1, 25.1, 1.1 y 2.

문제는 이미 인디오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Creole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주 문제는 결국 인디오와 Creole의 인권문제로 연결된다.¹¹⁾

(2) 문화적 정체성 권리, 건강한 환경권, 식량과 물 접근권

동 사건에서 자연권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주인권협약 제26조의 해석이다. 제26조에서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법원은 OAS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권의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는 제26조의 위반여부는 법원의 관할권에 있다고 보았다.¹²⁾ 법원은 국가가 '건강한 환경 독립권(autonomous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erecho autonomo a un medio ambiente sano)'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미 2017년 권고적 의견에서 제26조에 대한 해석을 했었는데, 국가는 환경침해를 예방할 의무와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¹³⁾

또한, 제26조에서 식량권(right to food, derecho a la alimentacion adecuada)과 물 접근권(right to access to water, derecho a al agua)의 근거를 밝혔다. 법원은 식량과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디오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 정체성 또는 동질성(right to cultural identity, derecho a la identidad cultural)의 권리를 보호받고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¹⁴⁾

법원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Creole의 활동관련하여 대부분 가축사육, 불법 벌목, 철망울타리의 사용 등이 인디오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바꾸게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들이 인디오들의 물에 대한 접근과 전통적인 식량취득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이러한 Creole 행위를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도록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불법 벌목과 철망울타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었으며, 인디오 공동체의 건강한 환경권, 문화적 정체성,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등 미주인권협약 제26조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¹⁵⁾

(3) 사법적 보호권(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미주협약 제8.1조에 규정된 '합리적 기간(within a reasonable time)'의 사법절차의 요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아르헨티나법원에서 해당 건 토지분할에 관련된 국내소송에 7년이 소요된 것은 합리적 기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¹⁶⁾

(법원판결)

법원판결을 통한 배상조치는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르헨티나정부가 6개월내에 해당 토지내에서 식량과 식수 접근이 부족한 곳을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판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Creole이 설치한 철망울타리를 철거하고 가축 및 Creole들을 인디오 토지 바깥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6년내로 완료하라는 결정이다. 또한, 4년내에 인디오 공동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또 다

11) 판결문 para. 137.

12) 판결문 para. 195.

13) Advisory Opinion OC-23/17. paras. 208.

14) 판결문 para. 242.

15) 판결문 para.289. Por lo dicho, la Corte determina que Argentina violó, en perjuici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víctimas del presente caso, sus derechos, relacionados entre sí, a participar en la vida cultural, en lo atinente a la identidad cultural, a un medio ambiente sano, a la alimentación adecuada, y al agua, contenidos en el artículo 26 de la Convención Americana, en relación con la obligación de garantizar los derechos prevista en el artículo 1.1 del mismo instrumento.

16) 판결문 para.300-302.

른 조치는 법원판결을 라디오와 기타 출판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했고, 인디오 공동체의 공동재산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으로 5만불을 지불할 것을 명했고, 법원이 법원판결의 이행을 감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 건은 미주인권법원이 인권협약 제26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법원은 건강한 환경, 문화적 정체성, 식량과 물을 인간이 존재하는 필수불가결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다른 권리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닌 그 스스로 독자적인 자율적 권리(autonomous rights, derecho autonomo)임을 인정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중심(ecocentrism)으로 전개한 것은 소위 신헌법주의(neo-constitutionalism) 국가들이며 이들의 헌법을 환경헌법(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이라고 부른다. 자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자연권(rights of nature)은 에콰도르가 가장 먼저 헌법에 명문화했다. 2008년 헌법은 Pachamama장을 두어 잉카문명이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접근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확인했다. 에콰도르에는 많은 수의 인디오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어머니인Pachamama를 숭배하고 인간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깊은 윤회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전체론으로 보기 때문에 Pachamama를 헌법상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eco-centrism에 기반하여 에콰도르사회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문명의 윤회관을 현대사회에 도입한 것은 법치국가의 법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 인간중심주의의 법인식론(legal epistemology)은 자연 또는 환경보호는 인간에게 유용하거나 인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즉,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을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파괴도 가능하고 자연보호도 인간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보호 정당성이 생긴다. 그런데 에콰도르 헌법의 자연권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는 인간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중심에 기반한 전체론적 접근은 인간중심의 법체계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법제는 그 해석과 적용방식이 환경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

실제로 자연권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증가추세에 있다.¹⁷⁾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인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에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를 공표하여, 동 협약의 대상인 Whanganui강의 법인격을 부여했다.¹⁸⁾ 구체적으로 제12조에 "Te Awa Tupua recognition. Te Awa Tupua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comprising the Whanganui River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incorporating all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 규정하여 원주민들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Whanganui강의 법인성을 인정하여, "14. Te Awa Tupua declared to be legal person (1) Te Awa Tupua is a legal person and has all the right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legal person." 명시했다. Te Awa Tupua는 역사적 권원을 가진 지역자연 그 자체로, 그 안에 살고있는 원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권리의 주체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IV. 생태중심적 법체계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연침해에 따른 환경변화가 COVID-19의 출현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자연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인간이 지구

17) 자연권의 입법현황과 법원판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조희문(2020), 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18) Te Awa Tupua means the legal person created by section 14

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 큰 이유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생태계의 순응단계를 넘어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왔다. 이제는 자연운명의 순응자가 아니라 조작자내지는 파괴자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접촉은 자연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사냥이 어려워지면서 야생동물들이 인간사회로 내밀려오면서 발생하고, 인간이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가축화 및 애완동물화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오랜시간을 거쳐 인간사회에서 공생하는 동물이나 생물이 아니라면 야생동물이나 생물이 인간사회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동물의 접촉으로 옮겨지는 질병의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자연파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밀업과 밀매이다. 국내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과 거래는 불법이지만 수요가 많다보니 근절이 어렵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달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밀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유통에는 조직적인 밀매업자들도 있지만 그 말단에는 생계형 현지인들의 협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식량조달 등 생계를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부재에 있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으려면 책임있는 발전과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지역사회가 의식을 갖고 자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 기본 전제조건은 자연생태계가 자정능력과 복원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정하는 능력이 있다. 생태계 균형이 일시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스스로 복원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이 생태계를 침해해도 어느 한도까지는 복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한계를 넘어설 때이다. 한계를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겠지만,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생물체가 되었다. 각 생물체는 각각의 생활영역이 있고, 서로 접촉하여 공존하기 위해서는 오랜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기간에 자연 생물체의 생활영역을 파괴하고 생물체의 생존을 위협하면 이러한 생물체에 기생하는 각종 병원균은 인간사회로 그 서식지를 옮기게 된다.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파괴는 그만큼 더 많은 바이러스질환을 인간사회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사회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자연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도 같은 목적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산림훼손을 줄이고 산림녹화를 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자연보존을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국내에 국한해서는 안되고 브라질과 같이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산림화 (또는 산림 파괴, deforestation)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국가단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구라는 유한한 자연환경은 국가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국가의 통제되지 않은 산림파괴가 지구환경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륙법계 법제의 초석을 세웠던 프랑스의 법제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2016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규정을 두었다. 자연에 피해를 가한 경우에 이러한 피해가 인간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복(repair)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¹⁹⁾ 이러한 법제변화는 최근 환경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연자체에 대한 원상회복과 치유권리를 부여

19) 2016년 개정민법은 제1246조에 “any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held liable”.이라고 규

하려는 방향성을 정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유럽경제위원회의 주관으로 채택된 1998년 Aarhus 환경협약 이래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익환경소송(일종의 환경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법제는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률실무가들 특히 법원이 관련 법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로 설계된 환경법제를 생태중심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자연에 대한 침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간사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침해를 입은 자연을 위해 판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산림과 자원개발을 해야겠지만 자연생태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부담해야 한다. 투자계획부터 기업활동의 과정과 결과까지 친사회적이고 친자연적이어야 한다. 기업활동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침해 시 복원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활동이 친사회적 친자연적 기능(pro-social, pro-nature function)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자연적이고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기업활동의 성과를 단순히 매출액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사회기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매출액과 이익금 등 재무적 구조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구조도 기업가치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지속성과 복원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이다. ESG는 이미 유럽의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기업평가에 ESG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나 금융대출의 평가항목으로 ESG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시장, 투자가, 경쟁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먹이사슬로 촘촘하게 얹혀있는 시장경제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파괴적인 기업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친사회적이고 친자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V. 결어 - 자연권은 생태주의적 법체계 구성의 첫 걸음

COVID-19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이제 시작이다. 그 동안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해온 지구위기가 이제 구체적인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는 감염병 팬데믹이던 다른 형태의 환경재앙이든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팬데믹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으로는 어렵고 국제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동안의 지구환경보호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 자원개발 등 주로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환경피해는 미세먼지 등이었으나 COVID-19는 인간의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피해였다. 어쩌면 COVID-19는 인간사회에 던지는 경고일 수도 최후통첩일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환경파괴가 부메랑이되어 지역전역에 COVID-19가 퍼졌고 '2020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까지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메시지는 모호하고 간접적이었으나 COVID-19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멸종되는 동식물의 보호,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 기후온난화로 인한 쓰나미 등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적었다. 그러나 COVID-19는 환경보호가 인간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지구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중심으로 설계된 환경법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법은 인간중심주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연보호의 작동원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자연을 중심에 두진 않았다. 자원개발이나 벌목 등의 경우도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인간이

정했는데, 환경피해를 아주 폭 넓게 규정하여, 환경 그 자체가 법적 독립체로써 프랑스 법제에서 소송당사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환경침해로 인간이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환경이 피해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 기준을 두고 환경규제를 한다. 어떠한 접근을 하던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연중심과 인간중심의 출발점에는 큰 차이가 있고 보호원리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법제설계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윤리적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가 자연을 인간생존을 위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동 논문에서 제시하는 담론은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지구생태계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holistic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제어하기 힘든 인간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중심적 법제도를 통한 시스템적 통제이다. 자연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연권의 인정은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지만 방향자체를 바꾼 걸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심대하다 하겠다. 국제환경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초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조희문 (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44권 3호, pp.443-469.
- 윤정현,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장철훈,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Acosta, Alberto (2012). La Naturaleza con Derechos – Una propuesta para un cambio civilizatorio. https://therightsofnature.org/wp-content/uploads/pdfs/Espanol/Acosta_DDN_2012.pdf
- Gudynas, Eduardo(2014). Derechos de la Naturaleza. Etica biocéntrica y políticas ambientales, PDTG, RedGE, CooperAcción y CLAES.
- Laastad, Synneva Geithus(2016). 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A Discourse Analysis on Ecuador's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Master Thesis in Human Geography,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UNIVERSITY OF OSLO.
- Martinez, Esperanza e Acost, Alberto(2017).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como puerta de entrada a otro mundo posible, Rev. Direito e Prax., Rio de Janeiro, Vol. 08, N. 4, 2017, p. 2927-2961.
- Pecharroman, Lidia Cano(2018). Rights of Nature: Rivers That Can Stand in Court, Resources, 7, 13; doi:10.3390/resources7010013 www.mdpi.com/journal/resources
- Pietari, Kyle (2016). Ecuador's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Implementation, Impacts, and Lessons Learned, FALL 2016 WILLAMETTE ENVIRONMENTAL LAW JOURNAL, pp. 37-94.
- Pineda Reyes, C. R., & Vilela Pincay, W. E. (2020). La naturaleza como sujeto de derecho en el ordenamiento jurídico ecuatoriano. Universidad y Sociedad, 12(1), 217-224.
- Prieto Mendez, Julio Marcelo (2013). Derechos de la naturaleza: fundamento, contenido y exigibilidad jurisdiccional, Quito: Corte Constitucional del Ecuador; CEDEC.
- Sara De Vido, Sara (2020). A Quest for an Eco-centric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the COVID-19 Pandemic as Game Changer, Jus Cogens, 11 Nov 2020, 1-13. <https://europepmc.org/article/pmc/pmc7656097>
- Stone, Christopher D.(2010). Should trees have standing?: law, morality, and the environment,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Tanasescu Marcel. (2014). The Rights of Nature: Theory and Practice. In: Wissenburg M., Schlosberg D. (eds) Political Animals and Animal Politics. The Palgrave Macmillan Animal Ethics Series. Palgrave Macmillan, London.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Buen Vivir 담론과의 관계 연구

조영현(부산외국어대학교)

라파엘 코레아와 Buen Vivir



문제제기

-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Alianza PAIS를 창당하고 좌파 이념과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정권을 장악했다. 1978년 민주화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없이 좌절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국가 개혁이 아닌 국가 재수립을 주장했다. 이런 혁명적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주체가 시민 자신이어야 한다고 보고 새 정권을 "시민혁명" 정부라고 명명했다.
- 원주민 세력, 사회운동 세력, 다른 좌파 정당들과 연대해서 2007년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원주민들의 삶의 경험과 우주관에서 파생된 Sumak Kawsay(Buen Vivir) 담론을 핵심 원리로 한 헌법을 공포했다. 이 담론을 토대로 국가발전계획도 정기적으로 기획했다. 그러나 과연 그는 지난 10년간 Buen Vivir 담론과 그 정책을 충실히 실천했는가? 과연 이 정부의 담론과 실천 간에는 어떤 간극과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 목적

- 코레아 정부가 취한 핵심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채굴주의 정책과 국가주도 발전 정책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원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억압했다. Buen Vivir 담론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모델과의 결별을 토대로 한다. 신채굴주의는 Buen Vivir 담론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 이 연구의 목적은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006년의 대선 정국(코레아의 공약)

- 신자유주의 비판과 21세기 사회주의 옹호.
- 제헌의회와 신헌법 약속.
- 진보세력, 사회당과 같은 좌파 정당과 제휴.
- 대외 채무 재협상 시사.
- 석유산업 개혁을 통해 빈민 구제 약속.
- 환경 보호에 소홀한 외국기업 비난.
- 사회개발 우선 정책 선언.
- 미국과 자유무역 반대, 미군기지 철수 주장.
- 원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들에 대해 호의적 태도 표명.

Buen Vivir 담론

-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우주관과 삶의 철학과 연관됨.
- 수막 카우사이라는 원리를 현대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 여기에는 발전에 대한 대안 찾거나 환경파괴 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와도 연결.
- 헌법의 목표로 설정.
- CONAIE같은 원주민 운동과 파차쿠틱 운동당의 목표.
- 웰빙이나 복지와는 다른 개념.
- 2008년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됨.

Buen Vivir 이념 노선의 다원성

- 원주민주의 : 기본적으로 자치공동체를 중시. 원주민의 전통, 권리, 문화, 윤리, 삶의 방식과 지혜 존중. 별칭은 '원주민 문화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인종차별주의 반대, 상호문화성과 다민족국가의 구현 주장.
- 포스트발전주의와 생태주의: 원주민의 비전을 존중하나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사상, 보편적 지식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 신자유주의와 서구식 발전주의, 채굴주의 반대. 탈식민 이론까지 수용. 인간중심주의 비판. 자연의 상품화에 반대하고 자연권, 파파마마 중시. '나쁜 발전' 모델과 경제 지상주의 비판.
- 사회주의 노선: 자본주의 비판. 계급, 노동 문제 강조, 빈곤 극복, 불평등 해소, 해방 강조. 21세기 사회주의와 연대경제 강조. 문화정체성이나 자연 환경의 지속성 문제보다는 공정한 부의 분배 강조.

코레아의 수막 카우사이 수용.

- 라파엘 코레아는 정치권력의 강화와 안정을 위해 원주민운동과 다양한 진보 세력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수막 카우사이를 수용해서 자신의 '시민혁명' 노선과 연결시켰다.
- 수막 카우사이의 공동체주의와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접목 시도.

출처:Luis Hidalgo y Patricia Cubillo(2018)

DATOS EDITORIALES Y CONTEXTUALES DE LOS PND DEL ECUADOR (2007-2021)

	PND 07-10	PND 09-13	PND 13-17	PND 17-21
Portada del PND				
Título del PND	<i>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7-2010</i>	<i>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i>	<i>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13-2017</i>	<i>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7-2021</i>
Subtítulo del PND	<i>Planificación para la Revolución Ciudadana</i>	<i>Construyendo un Estado Plurinacional e Intercultural</i>	<i>Todo el mundo mejor</i>	<i>Toda una vida</i>
Editor, lugar y año de publicación del PND	SENPLADES Quito, 2007	SENPLADES Quito, 2009	SENPLADES Quito, 2013	SENPLADES Quito, 2017
Nº de páginas del PND	458	520	600	148
Constitución del Ecuador	1998	2008	2008	2008
Mandato presidencial	2007-2009	2009-2013	2013-2017	2017-2021
Partido gobernante	Alianza PAIS	Alianza PAIS	Alianza PAIS	Alianza PAIS
Presidente de la República	Rafael Correa	Rafael Correa	Rafael Correa	Lenin Moreno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Lenin Moreno	Lenin Moreno	Jorge Glas	Mª Alejandra Vicuña
Secretario nacional de SENPLADES	Fander Falconí	René Ramírez	Fander Falconí	Andrés Mideros
Coordinador del PND	René Ramírez	René Ramírez	Carolina Báez	Adrián López

Nota: El PND 17-21 se comienza a redactar siendo Jorge Glas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pero la versión definitiva se aprueba siendo María Alejandra Vicuña vicepresidenta encargada, tras la destitución de Glas.
Fuente: Elaboración propia.

출처:Luis Hidalgo y Patricia Cubillo(2018)

TÉRMINOS Y EXPRESIONES REPETIDAS EN LOS PND DEL ECUADOR (2007-2021)

	PND 07-10	PND 09-13	PND 13-17	PND 17-21
BUEN VIVIR Y EXPRESIONES DE CONCEPTOS ANÁLOGOS				
Buen vivir	3	428	228	40
<i>Sumak kawsay</i>	0	5	19	0
Bienestar	47	15	28	14
Felicidad	0	9	13	2
EXPRESIONES DE CONCEPTOS COMPETIDORES CON EL BUEN VIVIR				
Revolución ciudadana	3	23	54	7
Socialismo del buen vivir	0	0	21	0
Transformación de la matriz productiva	0	0	101	15
Desarrollo humano	62	14	12	7
Desarrollo sostenible	21	6	8	21
EXPRESIONES DE LAS DIMENSIONES DEL BUEN VIVIR				
Identidad	44	45	63	29
Equidad	59	62	131	54
Sostenibilidad	51	41	152	34

Fuente: Elaboración propia.

출처: Guillermo Guzman y Jorge Polo(2017)

Tabla 1. Índice del buen vivir por objetivos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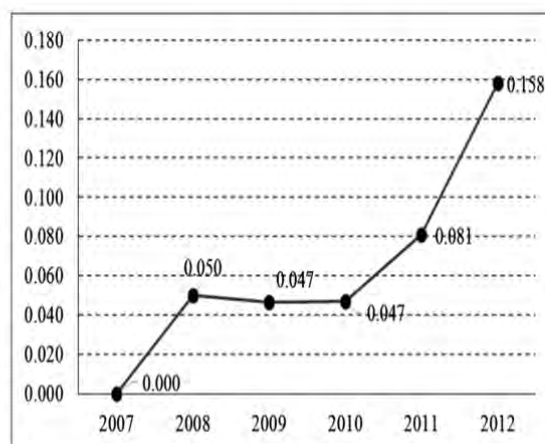
	Objetivo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Consolidar el Estado democrático y la construcción del poder popular	0,00	0,01	0,05	0,16	0,17	0,27
2	Auspiciar la igualdad, la cohesión, la inclusión y la equidad social y territorial en la diversidad	0,00	0,14	0,20	0,28	0,42	0,40
3	Mejorar la calidad de vida de la población	0,00	0,14	0,17	0,12	0,09	0,14
4	Fortalecer las capacidades y potencialidades de la ciudadanía	0,00	0,00	0,05	0,09	0,14	0,13
5	Construir espacios de encuentro común y fortalecer la identidades nacionales y diversas, la plurinacionalidad y la interculturalidad	0,00	-0,02	-0,12	-0,04	-0,02	-0,05
6	Consolidar la transformación de la justicia y fortalecer la seguridad integral, en estricto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0,00	-0,02	-0,14	-0,11	0,05	0,20
7	Garantizar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y promover la sostenibilidad ambiental, territorial y global	0,00	0,02	0,12	0,11	0,08	0,14
8	Consolidar el sistema económico social y solidario, de forma sostenible	0,00	0,55	0,56	0,18	0,62	0,79
9	Garantizar el trabajo digno en todas sus formas	0,00	-0,07	-0,12	-0,01	0,08	0,17
10	Impulsar la transformación de la matriz productiva	0,00	-0,04	-0,22	-0,21	-0,24	-0,22
11	Asegurar la soberanía y eficiencia de los sectores estratégicos para la transformación industrial y tecnológica	0,00	0,14	-0,13	-0,05	0,03	0,09
12	Garantizar la soberanía y la paz, profundizar la inserción estratégica en el mundo y la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0,00	-0,25	0,14	0,07	-0,44	-0,17
	Índice del buen vivir	0,000	0,050	0,047	0,047	0,081	0,158

Fuente: elaboración propia con base en Senplade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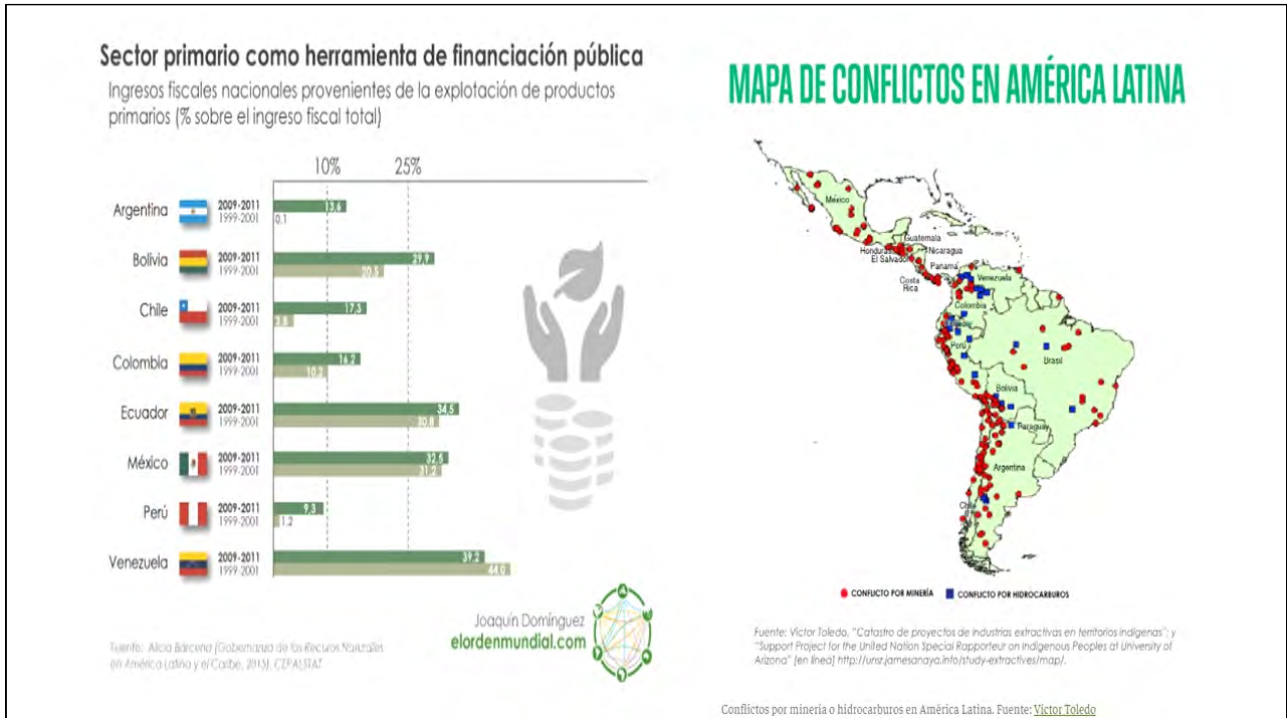
Buen Vivir의 실천 지표

출처: Guillermo Guzman y Jorge Polo(2017)

Gráfico 1. Índice del buen vivir (2007-2012)



Fuente: elaboración propia con base en Senplades (2013).



코레아의 신채굴주의(신자유주의 국가에서 광업국가로)

- 초기에는 아마존에서 석유 추출 중단 촉구. 급진적 전환 시도할 것처럼 선전.
- 채굴 경제 확대: 아마존 지역 석유 개발 시추 승인과 개방.
- 야수니 ITT 이니셔티브 포기.
- 2009년부터 광업 관련 메가 프로젝트 지원.
- 원주민 공동체 영토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구리, 금 채굴 관련 12개 프로젝트 추진.
- 국립광산기업(Empres Nacional Minera)이 있음에도 광산 생산 통제 못함: 시추 및 채굴권 양도- 칠레 국영기업, 캐나다 광산 기업, 중국 국영 Tongling 및 중국철도회사 등이 관리.
- 원주민들이 광산지역이나 석유 기업이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됨.

- 반대 시위 주동자나 운동 지도자 체포, 구금.
- 사회운동을 범죄시 함(테러와 사보타주와 같은 범주로 인식).
- 채굴과 추출에 대한 공개 토론과 논의 금지.
- 자연 vs 채굴주의 관계를 '가짜 딜레마'라며 거부(상호 배제적 관계 아니라고 주장).
- 책임 있는 채굴주의, 환경 친화적 추출주의 주장.
- 그러나 2015년 유엔 연설에서는 자연권 선언 필요성 강조
(정치적 수사로서는 계속 활용)

수막 카우사이 관련 코레아 정부에 대한 평가.

- 다빗 코르테스: "Sumak Kawsay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채굴 정책과 새로운 권력 강화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 파블로 다발로스: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운동과 사회운동세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는 Buen Vivir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한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운동을 억압했다. 석유 채굴과 광산 경제를 확대시켰다. 수막 카우사이를 담론으로 수용하고 이용했으나 적용하지 않았다."
- 아코스타: "라파엘 코레아는 신헌법이 아주 훌륭하고 앞으로 300년간 지속될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까우디요가 되었고, 헌법을 자신의 권력 집중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했다. 선전 효과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

마치며

- 코레아 정부의 채굴주의 정책은 공식적인 수사(Buen Vivir)와 상충되고 상반됨.
- 공식 담론은 인간과 자연 착취 비나, 천연자원 채굴에 기반 경제 발전정책 비판, 기존의 서구식 발전모델 거부. 그러나 채굴주의 밀어붙임.
- 처음부터 의지가 별로 없었다. 정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수막 카우사이 담론을 이용.
- 수막 카우사이 자체가 매우 다양한 이념 노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음.
- 하나의 담론이 아닌 다양한 사유들이 혼재 함.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 코레아를 압박하지 못함.
-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만 실천(교육, 보건, 주택 개선...주민 소득과 생활 개선과 같은 복지차원에서).
- 코레아는 수막 카우사이가 아닌 신채굴주의를 통한 국가발전 시도.
-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아닌 리더의 통치력 강조(권위주의 정책 시도).
- 원주민운동과 다양한 진보세력과 결별(예, 정치적 지지세력이었던 CONAIE와 정치적 멘토였던 아코스타 등과 결별).
- 국가주도(강한 정부와 정치적 리더)로 경제성장을 이루려 함.
- 시민 주도 혁명이 아닌 리더의 지도력 신뢰.

그렇다면 수막 카우사이는 어디에서 주로 실천되는가?



참고문헌

- Barbora, Valisková(2016), "Análisis de la posición ideológica del gobierno ecuatoriano en el contexto de la movilización indígena antiextractiva", *Cuaderno del Cendes*, 91, pp. 65-91.
- Fernández, Balca S. Y et. al(2014), "El buen vivir en Ecuador: ¿marketing político o proyecto en disputa? Un diálogo con Alberto Acosta", *I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48, pp. 101-117.
- Guzmán Prudencio, Guillero y Jorge Polo Blanco(2017), "La construcción discursiva del Sumak Kawsay ecuatoriano y su relación con la consecución en los objetivos del Buen Vivir", *Análisis político*, 89, p. 76-90.
- Le Quang, Matthieu(2017), "Interpretaciones y tensiones alrededor del Buen Vivir en Ecuador", *Papeles de relaciones ecosociales y cambio global*, 137, pp. 145-158.
- Luis, Hdalgo Capitán y Patricia Cubillo(2018), "Otro y ocaso del Buen Vivir en la planificación Nacional del Desarrollo en Ecuador(2007-2017)", *América Latina Hoy*, 78, pp. 37-54.
- Muñoz Jaramillo, Francisco(2014), *Balance crítico del gobierno de Rafael Correa*, Quito: 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브라질 원주민과 토지소유권 문제

차별과 불평의 역사적·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김영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연구배경

- 현 정부 정책과 원주민 공동체의 대립 : 2018년-2019년폭력 증가
 - 고유 자산에 대한 폭력: 토지 구획 미설정, 원주민 토지 침입
 - 사람에 대한 폭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 공권력의 태만으로 인한 폭력:
-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 공방
- 원주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 문제제기

- 왜 원주민의 토지소유권리가 브라질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기업 농과 광산 개발로 끊임없이 침해 받고 있는가?
-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떤 역사적·법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는가?

2. 원주민 토지 구획 면적과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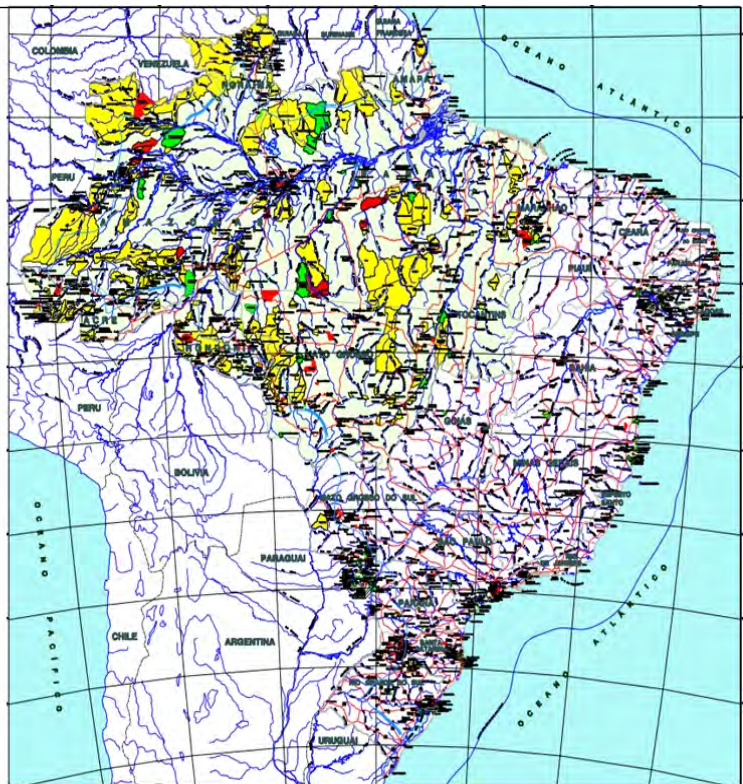
진행단계	단계별	면적(ha)
DELIMITADA	43	2.183.990,4500
DECLARADA	75	7.612.681,3759
HOMOLOGADA	9	334.546,3127
REGULARIZADA	441	106.948.034,6108
TOTAL	568	117.079.252,7494
EM ESTUDO	119	0,0000
PORTARIA DE INT ERDIÇÃO	6	1.080.740,0000



- 구획 확장 지지
 - 역사적 부채 상환과 헌법적인 의무
 - 발견과 브라질 건설 과정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상
 - 1934년부터 원주민의 토지 보장 유지
 - 삶의 방식 보존, 환경 보존과 사회 보호
 - 수렵, 채집과 어로 활동 등의 전통적인 방식 보존
 - 원주민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나은 생태계 보존
 - 305개 부족, 274개 언어 사용
- 구획 확장 반대
 - 보우소나루 대통령 원주민 보호 구역 확대 반대
 - 국가 주권과 공공 안정 위협
 - 아마존을 비롯한 국경지역 방어 문제 등
 - 경제발전 장애
 - 자원 개발과 기업 농업을 통한 개발
 - 원주민 사회 통합
 - "O índio é um ser humano igualzinho a nós" (보우소나루의 인종주의적 발언)

원주민 토지 분포도

- 1ª etapa: 연구단계(Em estudo)
 - 원주민 토지에 대한 식별과 경계 설정을 위한 연구
- 2ª etapa: 지정고시(Delimitadas)
 - FUNAI 이사장이 보고서 내용 확인하고 승인, 관보에 공지
- 3ª etapa: 선언단계(Declaradas)
 - 사법부의 판례로 승인된 땅
- 4ª etapa: 승인단계(Homologadas)
 - 대통령의 승인으로 지리좌표화되고 구체적인 경계가 생긴 땅
- 5ª etapa: 등록단계(Regularizadas)
 - 승인된 이후 연방자산관리청과 연방명의로 등기소에 등록된 땅
- 6ª etapa: 금지단계(Interditadas)
 - 독립적인 원주민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유입과 이용이 금지됨
- 북부 아마존 지역의 Amazon Legal
- 원주민 토지(terra indígena)는 "마을(aldeia)", "원주민 토지(terra indígena)", "원주민 보호구역(reserva indígena)"과 "원주민지역(área indígena)" 등으로 불림



3. 원주민 토지 획정의 기능



- 개별 원주민 종족 차원
 - 원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 비원주민들의 침입과 점유를 예방할 수 있음
 - 원주민들의 종족적 정체성 유지
 - 토지 점유에 대한 분쟁 감소
- 거시적인 차원
 - 브라질의 다민족, 다문화(pluriétnica e multicultural) 사회 구성에 도움
 - 벌목을 막기때문에 온실효과(efeito estufa)를 줄이는데 도움
 -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감축에도 도움



4. 원주민 토지 권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

- 원주민 고유권리론(A TEORIA DO INDIGENATO)
 -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옹호
 - 1902년 주앙 멘지스 주니오르(João Mendes Júnior)가 주장
 - 원주민들의 헌법주의자와 행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침
 - 천부권(Direito Inato)을 인정
 - 1988년 헌법의 231조 강조
- 원주민실체론(A TEORIA DO FATO INDÍGENA, MARCO TEMPORAL(시간 표시))
 - 2009년 하보자 세하 두 솔 원주민 토지(TI Raposa Serra do Sol) 구획 설정 소송 과정에 대두
 - 전통적으로 원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확정적인 날짜(1988년 10월 5일 헌법 공표일)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루어짐.
 - 비판적 관점
 - 식민과정 원주민들이 받은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관점이란 비판
 - 원주민의 자율권과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결정(Dussel, 2005)
 - 식민기간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적 식민주의(COLONIALISMO INTERNO)라고 비판 (Casanova, 2007)

5. 원주민 토지소유권 문제의 역사적 이해

- 식민기간 원주민들에 대한 분류:
 - 마을 정착 원주민,
 - 포르투갈 등맹 원주민,
 - 오지에 거주하는 적대적인 원주민
- 브라질의 식민기간 토지법(Lei de Terras)
 - 1680년 4월 1일 칙령(Alvara Regio) 19세기까지 운용
 - 원주민들이 점령한 특정한 지역의 소유권을 인정
 - 착취의 제도: 원주민들의 강제이주 및 해체 등
- 1891년 공화국 헌법에도 원주민들의 토지 문제는 적시되지 않음
 - 포르투갈 왕정에서 인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됨
 - 원주민은 경제발전과 진보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
 - 1910년 전국 노동자 배치와 원주민보호청(o Serviço de Proteção aos Índios e Localização de Trabalhadores Nacionais, SPILTN) 신설됨
 - 1918년 원주민보호청(o Serviço de Proteção aos Índios)으로 변경
 - 원주민은 문화적 열등성을 지닌 개화의 대상으로 파악
 - 1928년 제5,484호 법령이 발표: 원주민들의 법률적인 상황을 규정
 - 브라질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
 - "유목민 집단(grupos nômades)",
 - "정착민(aldeados ou arrancados)",
 - "농경지 통합(incorporados a centros agrícolas)",



5. 원주민 토지소유권 문제의 역사적 이해

- 1934년 헌법: 토지 비양도에 찬성하는 조항 입법
 -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를 인정
 -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원주민 단체와 정치연대 확대
 - 1946년 헌법 216조: 변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면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를 인정
- 1967년 헌법:
 - 1967년 12월 5일 국립원주민재단(Fundação Nacional do Índio, Funai) 설립
 - 원주민 토지가 연방 소유, 원주민들이 독점적 소유와 양도할 수 없는 것
 - 원주민 토지를 획정 가능성이 열림
- 1973년 12월 19일에 제6,001호 법령으로 원주민 법(Estatuto do Índio) 제정
 - 법률적-행정적인 규정: 원주민 토지(terra indígena)라는 개념 최초 도입
 - 부족(nação)에 대한 원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규정
 - 원주민 토지에 대한 정의, 토지 법제화 과정, 지원조치 규정, 개인으로서의 원주민 인정
 - 원주민 토지 문제를 전담할 기구로서 Funai를 인정
 - 원주민들이 정착하거나 점유한 땅(As terras ocupadas ou habitadas pelos silvícolas)
 - 보호구역(As áreas reservadas)
 - 원주민 공동체의 영유 땅(As terras de domínio das comunidades indígenas ou de silvícola)

6. 1988년 헌법 제231조

- Art. 231. São reconhecidos aos índios sua organização social, costumes, línguas, crenças e tradições, e os direitos originários sobre as terras que tradicionalmente ocupam, competindo a União demarcá-las, proteger e fazer respeitar todos os seus bens.
- 제 231조. 원주민들에게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과 전통, 전통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연방은 그 토지에 대해 경계를 확정하고 모든 자산을 보고하고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 §1º - São terras tradicionalmente ocupadas pelos índios as por eles habitadas em caráter permanente, as utilizadas para suas atividades produtivas, as imprescindíveis à preservação dos recursos ambientais necessários a seu bem-estar e as necessárias a sua reprodução física e cultural, segundo seus usos, costumes e tradições.
- 제1항 전통적으로 원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한 땅이며, 생산활동을 위해 이용한 땅, 그들의 활용, 관습과 전통에 따라 문화적, 물리적 재생산에 필요하고 복지에 필요하며 환경자원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땅이다.



6. 1988년 헌법 제231조

- §2º - As terras tradicionalmente ocupadas pelos índios destinam-se a sua posse permanente, cabendo-lhes o usufruto exclusivo das riquezas do solo, dos rios e dos lagos nelas existentes
- 전통적으로 원주민들이 점령한 땅은 영구적인 소유를 위한 것이며, 그곳에 존재하는 토양, 강과 호수의 부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다.
- §3º - O aproveitamento dos recursos hídricos, incluídos os potenciais energéticos, a pesquisa e a lavra das riquezas minerais em terras indígenas só podem ser efetivados com autorização do Congresso Nacional, ouvidas as comunidades afetadas, ficando-lhes assegurada participação nos resultados da lavra, na forma da lei.
- 원주민 당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굴, 에너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수자원의 이용은 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의 채굴 결과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 §4º - As terras de que trata este artigo são inalienáveis e indisponíveis, e os direitos sobre elas, imprescritíveis
- 본 항에서 언급하는 땅은 양도하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불가침의 권리이다.

7. 전통적인 인구의 토지재산권 현황

Type of traditional population	Legislation	Land rights
Indigenous populations	1988헌법: articles 20, XI, and 231(7)); 1973년 원주민법 (Indigenous Act 1973, Lei nº 6001/73)	- 원주민 토지는 연방에 속함. - 원주민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땅을 영구 보유할 수 있음 - 지표면 자원의 독점적 사용 권리 지님
Quilombolas	1988 헌법 (Transitory Dispositions, article 68)	- 연방정부, 주정부와 시정부가 집단적인 재산권을 부여 - 토지는 나눌 수 없음 - 재산 등록은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해야 함
Nonindigenous traditional populations	대서양 산림법(Atlantic Forest Act (Law nº 11.428/06); Conservation Units Act (Law nº 9985/00)	- 승인없이 장작이나 건축 목재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보호구역에 머물 수 있는 권리

Márcia Dieguez Leuzinger and Kylie Lyngard(2016), p.426



8.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와 원주민의 대립

- 멈춘 구획 설정(Demarcações paralisadas)
 - 1988년 헌법 231조 권리 인정
 - 5년 이내에 원주민 토지권 인정 완료 명시
 - IBGE에 따르면 원주민의 42%가 원주민 토지 외부 거주
- 원주민 토지에서 광산 개발(Mineração em terras indígenas)
 - 지하자원이 풍부한 땅 위의 원주민들을 가난하게 둘 수 없다.
- 기업 농업의 확장(Expansão do agronegócio)
 - 목축업 장려로 소고기 가격 인하할 수 있다.
- 통합과 문화(Cultura e integração)
 - 원주민들은 브라질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군부정권기의 주장)-인종주의적이고 문화중심주의
- 원주민 단체(Órgãos indigenistas)
 - 원주민 재단(Fundação Nacional do Índio, Funai)를 법무부에서 농무부로 이관



까야쑤(Kayapó) 부족의 Raoni Metuktire 주장
: 환경/원주민 지도자

9. 원주민 운동의 내용

- 다양성 추구: "원주민은 하나로만 존재하는가?"
- 통합주의에 대한 저항
- 원주민 토지 소유권 문제
- 인격권의 보장
- 범원주민(Pan-indigena) 정치연대
- 정치·사회 문화적인 동질성과 평등권
- 원주민들의 정치적 단결
- 비극적인 원주민 소멸 프로젝트를 타파.
- 영토성(Territorialidade) 확보
- 차별 받는 시민권 회복
-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저지



Davi Kopenawa :
야노마미 사제이자 대변인



Joénia Wapicahana: 원주민 최초 변호사, 연방하원의원/현 원주민 인권
보호 위원회 의장

10. 원주민 출신들의 지방선거 진출현황

379,5 mil

Em cidades ou
no campo

517,4 mil

Em terras
indígenas

42% 58%

TOTAL
896,9
mil

AUMENTA NÚMERO DE INDÍGENAS ELEITOS

Indígenas eleitos por partido/2020

Partido	Número
PT	24
MDB	23
PSD	19
PP	15
DEM	14
CIDADANIA	12
REPUBLICANOS	12
PR/PL	11
PSB	10
PSC	8
PDT	7
PROS	6
PFB	6
PIS	5
PTN/PSG/PROS	5
REDE	5
AVANTE	4

Indígenas eleitos por estado/2020

Estado	Número
AM	28
PA	18
RR	15
PE	14
RS	14
MS	13
MT	11
BA	9
MG	9
MA	8
PA	8
AC	6
AL	5
TO	5
PR	4
RO	4
SP	4
CE	3
SC	2
AP	2

- 2016년 1,745명에서 2020년 2,216 명으로 출마 인원 증가
 - 정당 분포: 노동자당(PT) 24명, 브라질민주운동(MDB) 23명, 민주사회당(PSD) 19명, 진보당(PP) 15명, 민주당(DEM) 14 명 순
 - 주별 분포: 아마조나스(Amazonas) 38명, 파라이바(Paraíba) 18명, 호라이마(Roraima) 15명, 페르남부쿠(Pernambuco), 바이아 (Bahia) 9명, 아그리(Acre) 6명

11. 결론에 대신하여

- 역사적 관점
 - 포르투갈의 도착 이후 수탈의 희생자
 - 20세기 원주민의 토지(영구 점령, 전통적인 점령 방식, 점령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됨
 - 통합주의적 관점의 접근 유지
 - 교화의 대상으로의 원주민
- 법적인 문제
 - 1998년 헌법의 의미: 다문화주의 헌법, 원주민 토지 권리의 고유성(originalidade) 인정,
 - 원주민 토지 승인의 대통령의 독점과 연방 소유.
 - 원주민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o direito de propriedade)이 인정되지 않음
- 원주민 토지 소유권은 원주민들의 삶과 전통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
- 원주민 토지 소유권 보장은 브라질의 생태문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9. 참고문헌

- 조영현, 김영철, 김희순 지음(2020), [인종과 불평등], 알렘
- João Fellet(2020), Os 5 principais pontos de conflito entre governo Bolsonaro e indígenas
- Cresce número de prefeitos e vereadores indígenasFonte: Agência Câmara de Notícias, Cresce número de prefeitos e vereadores indígenas - Notícias - Portal da Câmara dos Deputados (camara.leg.br)
- Fernando Martins(2018), Os índios têm muita terra no Brasil?
- Caroline Barbosa Contente Nogueira and DÉBORA SILVA MASSULO, "A TEORIA DO INDIGENATO VS TEORIA DO FATO INDÍGENA (MARCO TEMPORAL): BREVE ANÁLISE DESDE A PERSPECTIVA DO COLONIALISMO INTERNO", emporiodireito.com.br
- Elizângela Cardoso de Araújo Silva(2018), "Povos indígenas e o direito à terra na realidade brasileira" Serviço Social & Sociedade. no.133 São Paulo
- Pedro Alberto Calmon Holliday(2016), O CONFLITO INTERÉTNICO, A TEORIA DO INDIGENATO E A TERRA INDÍGENA RAPOSA/ SERRA DO SOL
- Thiago Leandro Vieira CAVALCANTE, "TERRA INDÍGENA": aspectos historicos da construcao e aplicacao de um conceito juridico, História (São Paulo) v.35, e75, 2016 ISSN 1980-4369
- Márcia Dieguez Leuzinger and Kylie Lyngard, "The land rights of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in Brazil and Australia" Revista de Direito Internacional, Brasília, v. 13, n. 1, 2016 p.419-439.